

日本の農業振興地域制度(Ⅱ)

— 農業振興地域整備計劃の策定要領 —

1988. 10

金 聖 昊(研究委員)

金 正 鎬(責任研究員)

金 泰 坤(研究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일 러 두 기

이 자료집은 농지보전관계 자료집 제 2 집(1988. 5)에서 소개된 日本의 農業振興地域制度중 「農業振興地域整備計劃」의 策定要領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제도의 구조는 농업 및 농촌의 일체적·계획적인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都道府縣知事が 農林水産大臣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정비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이 방침에 근거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지정된 市町村은 知事の 인가를 받아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을 책정, 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지역의 정비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은 농용지 등으로 이용해야 할 토지의 區域 및 그 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농업적인 用途區分, 농업생산기반의 정비개발에 관한 사항, 농업경영규모의 擴大 및 농용지등의 효율적인 利用促進에 관한 사항, 農業近代化施設의 정비에 관한 사항, 농업종사자의 안정적인 就業促進에 관한 사항, 농업종사자의 양호한 生活環境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러한 내용가운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어느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따라 정비계획은 農業・農村再編型, 土地利用再編型, 地域活性型 및 地域開發對應型등으로 나누어지나 여기서는 농업·농촌재편형과 토지이용재편형만 소개하였다. 또 정비계획을 구상할 때에는 基礎資料를 作成하여 참고하도록 되어 있어 基礎資料의 記載要領도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이 자료집은 일본의 全國農業會議所, 農業委員會, 縣農政課등에서 이용하고 있는 내부자료를 수집, 정리한 것임을 밝혀 둔다.

빈 면

目 次

第 1 編 農業振興地域制度의 運用方法	3
I. 農業振興地域制度의 主要内容	5
1. 農業振興地域制度의 目的	5
2. 農業振興地域制度의 構造	5
3. 農業振興地域 整備計劃을 達成하기 위한 措置	7
II. 農業振興地域制度의 運用方法	9
1. 地域指定의 要件	9
2. 地域의 土地利用과 農用地利用計劃	10
3. 農用地 利用計劃의 概要와 部落土地 利用構想	13
4. 農業振興地域 區域範圍의 變更	16
5. 農業振興地域 整備計劃의 變更	18
6. 農用地區域에서의 除外時 審査基準	19
7. 農業振興地域 整備計劃의 策定方法・內容等の 變遷	21
8. 農業振興地域 整備의 推進(補助事業)	25
第 2 編 農業振興地域 整備計劃의 策定要領	27
I. 「農業・農村再編型」 農業振興地域整備計劃書	29
1. 地域의 振興方向	34
2. 農用地 利用計劃	34
3. 農業生産基盤의 整備開發計劃	42
4. 農業經營의 規模擴大 및 農用地等の 農業上の 效率的・綜合的인 利用의 促進計劃	44
5. 農業近代化 施設의 整備計劃	45
6. 就業機會의 擴保・擴大計劃	48
7. 農村生活環境施設의 整備計劃	50
8. 地域資源의 利用 및 管理・保全에 관한 計劃	52
9. 附 圖	54
別記 農用地利用計劃	56

＜ 附 ＞ 「農業・農村再編型」計劃書 基礎資料의 記載要領	63
II. 「土地利用再編型」農業振興地域整備計劃書	111
1. 地域의 振興方向	116
2. 農用地利用計劃	116
3. 農業生産基盤의 整備開發計劃	124
4. 農業經營의 規模擴大 및 農用地等の 農業上の 效率的・綜合的인 利用의 促進計劃	126
5. 農業近代化施設의 整備計劃	128
6. 農業從事者の 安定的인 就業의 促進計劃	130
7. 生活環境施設의 整備計劃	132
8. 附 圖	132
別記 農用地利用計劃	136
＜ 附 ＞ 「土地利用再編型」計劃書 基礎資料의 記載要領	143

第 1 編 農業振興地域制度의 運用方法

빈 면

I. 農業振興地域制度의 主要内容

1. 農業振興地域制度의 目的

수요의 동향에 따른 農産物의 安定的인 供給과 생산성이 높은 農業經營의 育成을 도모하기 위하여 國토資源의 合理的 利用이라는 견지에서 타산업의 토지이용과의 조정에 유의하면서 農業의 振興을 圖謀해야 할 지역을 지정하여 토지의 農業上의 有效利用과 農業近代化를 위한 시책을 綜合的·計劃的으로 추진한다.

2. 農業振興地域制度의 構造

가. 農業振興地域整備基本方針

都道府縣知事は 農林水産大臣의 승인을 얻어 農業振興地域整備基本方針을 정한다.

(基本方針의 内容)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기준
- 지정예정지역의 위치 및 규모

나. 農業振興地域의 指定

都道府縣知事は 가의 基本方針에 근거, 일체적으로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 적당하며, 일정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農業振興地域으로 指定한다.

(農業振興地域의 指定要件)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지역

- ① 금후 대략 10 년이상 종합적으로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할 지역일 것.
- ② 농용지등으로 이용해야 할 상당규모의 토지가 있을 것.
- ③ 지역내에서 농업생산성의 향상등을 도모할 가능성이 확실할 것.
- ④ 농업상의 고도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적당한 토지일 것.

단, 다음 지역은 제외

- ① 시가화구역, 용도지역, 자연공원법의 특별보호지구
- ② 규모가 큰 삼림등

다. 農業振興地域整備計劃의 策定

- (1) 나의 指定을 받은 市町村은 都道府縣知事の 認可를 받아서 그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農業振興地域整備計劃을 정한다.

(計劃事項 등)

- | | |
|--------------------------------------|-------------------|
| ① 농용지 이용계획(구역설정, 용도구분)..... | ZONING |
| ②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개발 | |
| ③ 농업경영의 규모확대 및 농용지등의 농업상의 효율적 이용의 촉진 | } ... MASTER PLAL |
| ④ 농업근대화시설의 정비 | |
| ⑤ 농업종사자의 안정적인 취업 촉진 | |
| ⑥ 농업종사자의 양호한 생활환경시설 정비 | |
| ⑦ 삼림의 정비 기타 임업의 진흥과의 관련에 관한 사항 | |

* 농용지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농용지이용계획의 법적효과에 비추어 공고후 縦覽 (30 일), 이의 신청기간(15 일)을 설정한다 (농용지이용계획의 변경시에도 同一 절차).

(2) 都道府縣은 2 이상의 農業振興地域을 통하는 광역의 건지에서 정하는 것이 적당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을 정할 수 있다 (擴域營農團地整備計劃으로서 정하고 있다).

라. 交換分合의 實施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용지개발적지를 집단적으로 확보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토지의 교환분합을 행할 수 있다. 또 교환분합시에 不交換申請 또는 同意가 있는 토지를 原資로 하여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에서 정해진 환경시설 등의 용지를 만들 수 있다.

마. 土地利用에 관한 措置

농용지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농업상의 이용의 확보를 위하여 특정이용권의 설정, 개발행위의 제한, 市町村長의 권고, 都道府縣知事の 조정, 농지등의 轉用의 제한, 농업위원회에 의한 농지등에 대한 權利取得의 斡旋 등의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가 있다.

바. 協定の 締結

주민의식의 다양화 등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농업, 생활에 직결하는 제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농업자 등의 자주적인 協議에 기초를 둔 다음과 같은 協定을 체결할 수 있다.

- ① 축사, 퇴비사 등의 적절한 배치에 관한 협정
- ② 농업용용배수시설의 유지운영에 관한 협정

3. 農業振興地域整備計劃을 達成하기 위한 措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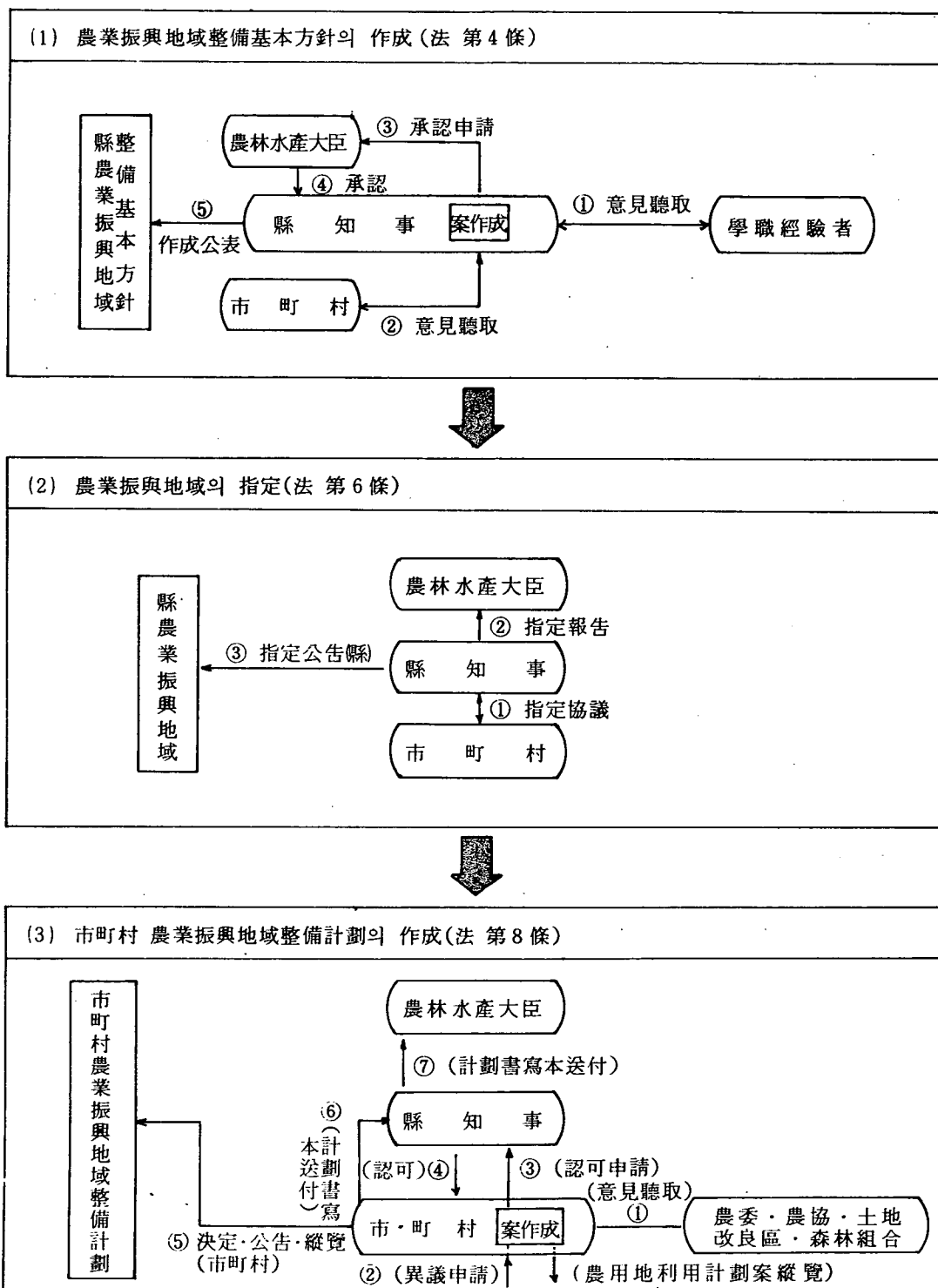
가. 稅制上的 優待措置

- (1) 市町村長の 권고, 都道府縣知事の 조정 또는 농업위원회의 알선에 의하여 토지가 양도 또는 취득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강구되고 있다.
 - ① 농용지구역내의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500 만円の 특별공제
 - ② 농용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事業用資産의 대체매입 특례
 - ③ 농용지구역내의 농용지등의 所有權移轉登記에 대해 登録免許稅의 세율이 1,000 分の 20 으로 경감
 - ④ 농용지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不動産取得稅의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토지가격의 3 分の 1 에 상당하는 액을 가격에서 공제
- (2) 농용지구역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相續稅評價時에 전부 「準農地」로 취급한다.

나. 農業施策의 集中的 實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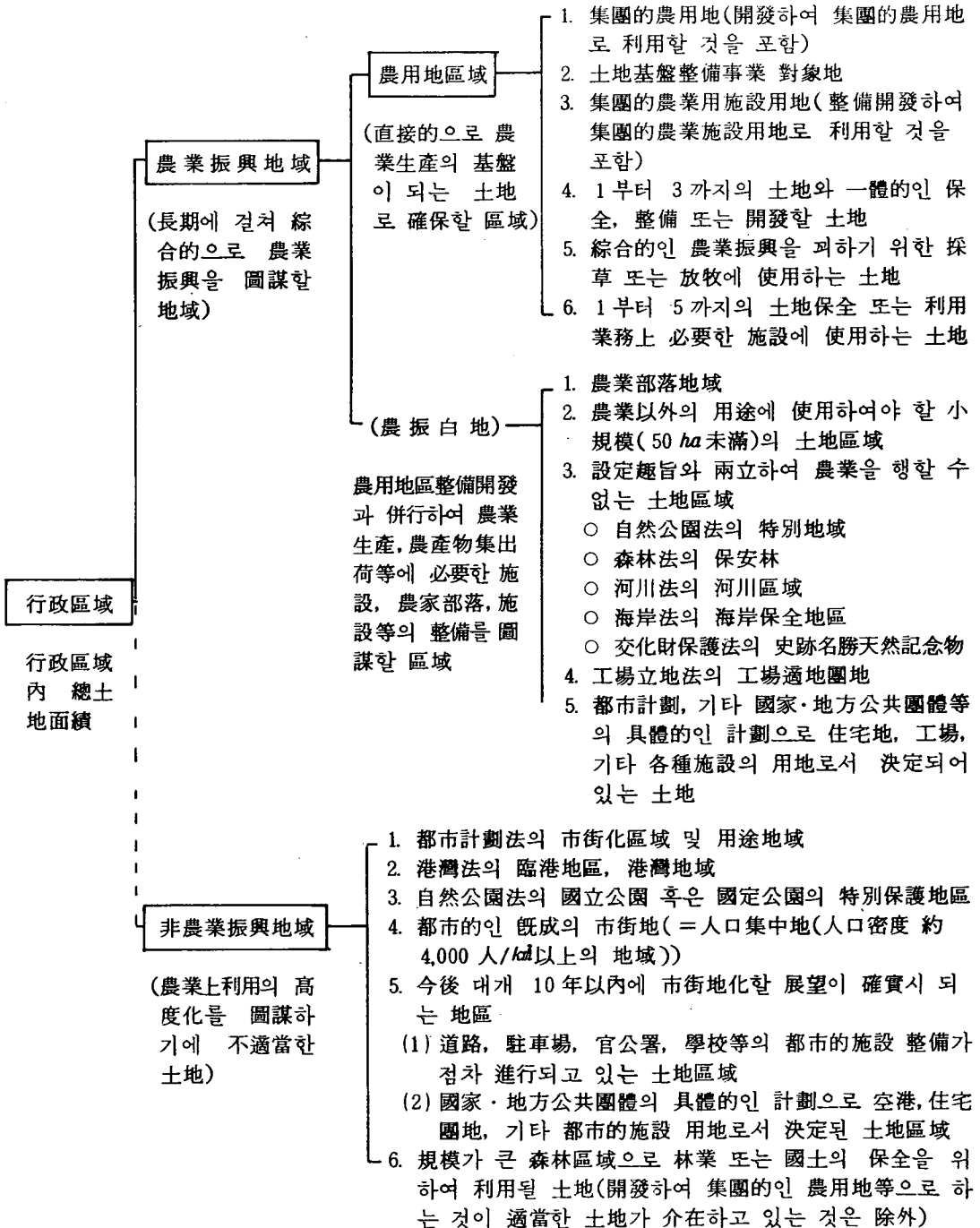
- (1) 국가의 直轄事業, 補助融資事業은 원칙적으로 농용지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 (2) 농업진흥지역이외의 구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農業生産條件을 당면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에 한한다.

<圖 1> 農業振興地域制度の概念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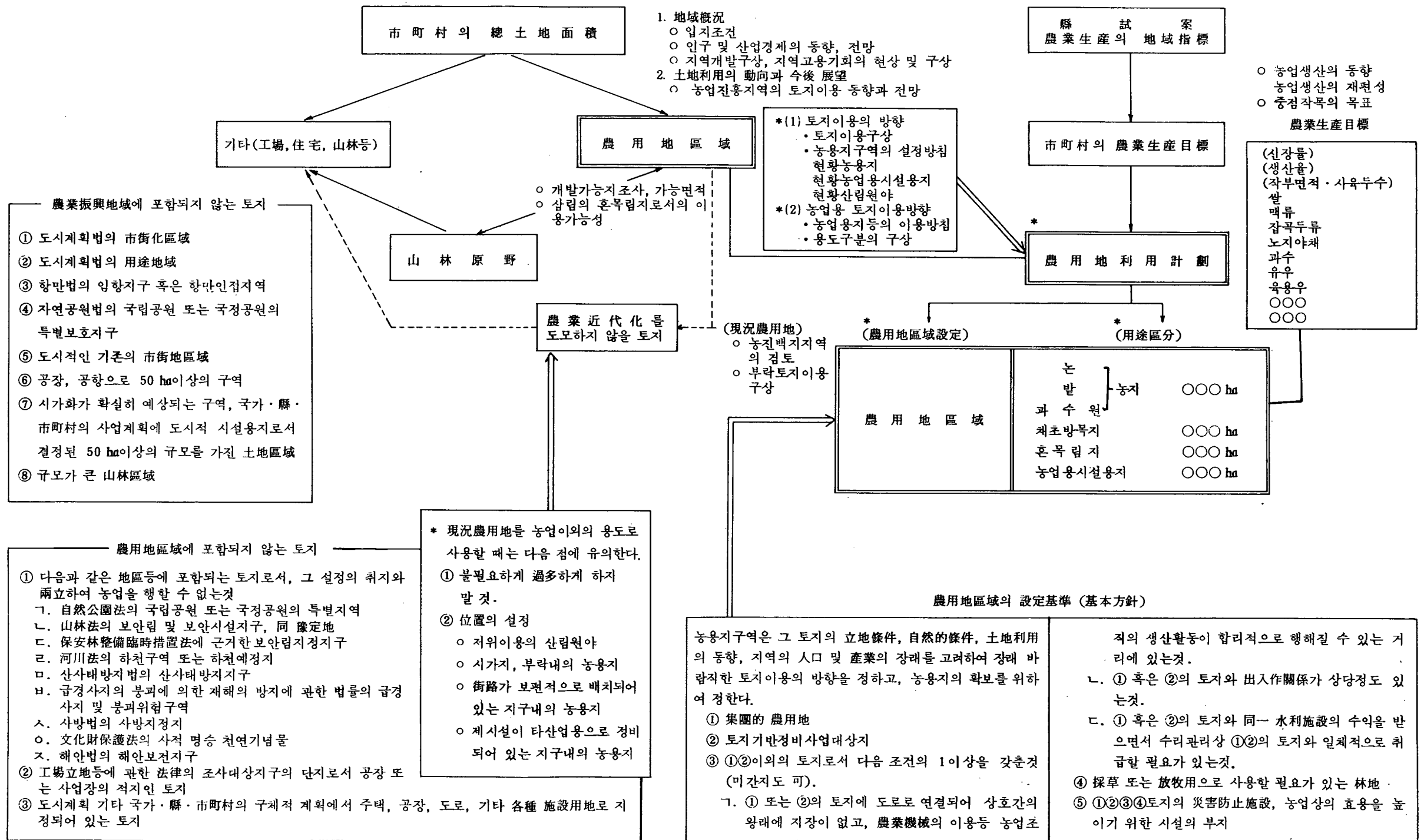
Ⅱ. 農業振興地域制度의 運用方法

1. 地域區分의 要件



빈 면

2. 地域의 土地利用과 農用地利用計劃



빈 면

3. 農用地利用計劃의 概要와 部落土地利用 構想

가. 農用地利用計劃의 概要

(1) 농용지이용계획

농업생산의 기반이 되는 「農用地區域」과 用途區分을 정한다.

(農用地區域)

- ① 現況農用地와 開發造成하여 농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現況山林原野 및 農業用施設 用地를 구역내에 포함할 수 있다.
- ② 농용지구역에 대해서는 농업시책이 종합적,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 ③ 농용지구역의 면적은 대개 10 ~ 20 ha이상의 集團의인 農用地가 필요하다.

(用 途 區 分)

- ①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농 지 (논, 밭, 수원지)
 - 채초방목지
 - 혼 목 립 지
 - 농업용시설용지
- ② 구분은 현재 이용상황의 土地改良事業 實施後의 토지이용등도 고려하여 구분한다.

(規 制)

농용지구역내의 토지는 지정한 용도이외의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또 開發行爲는 知事의 허가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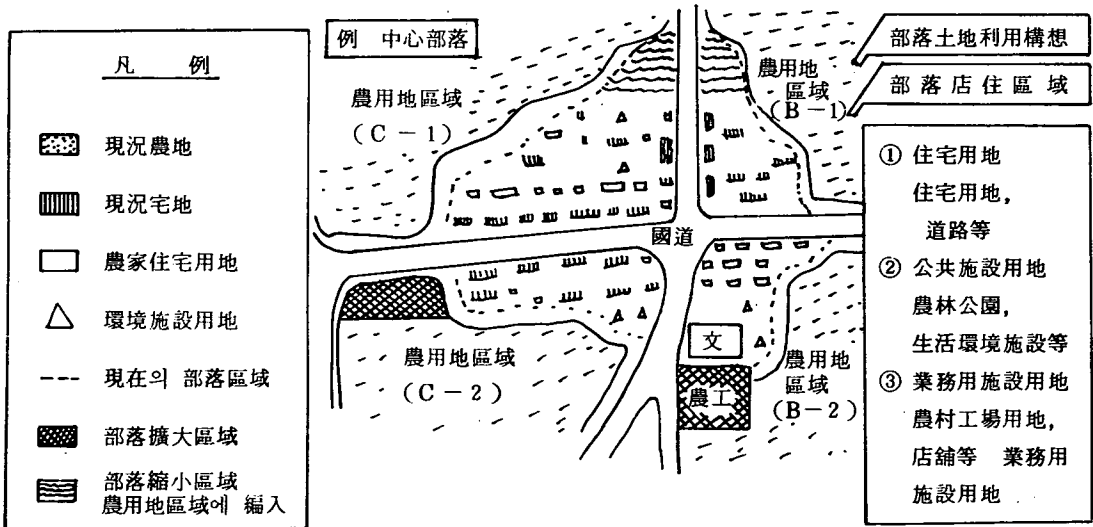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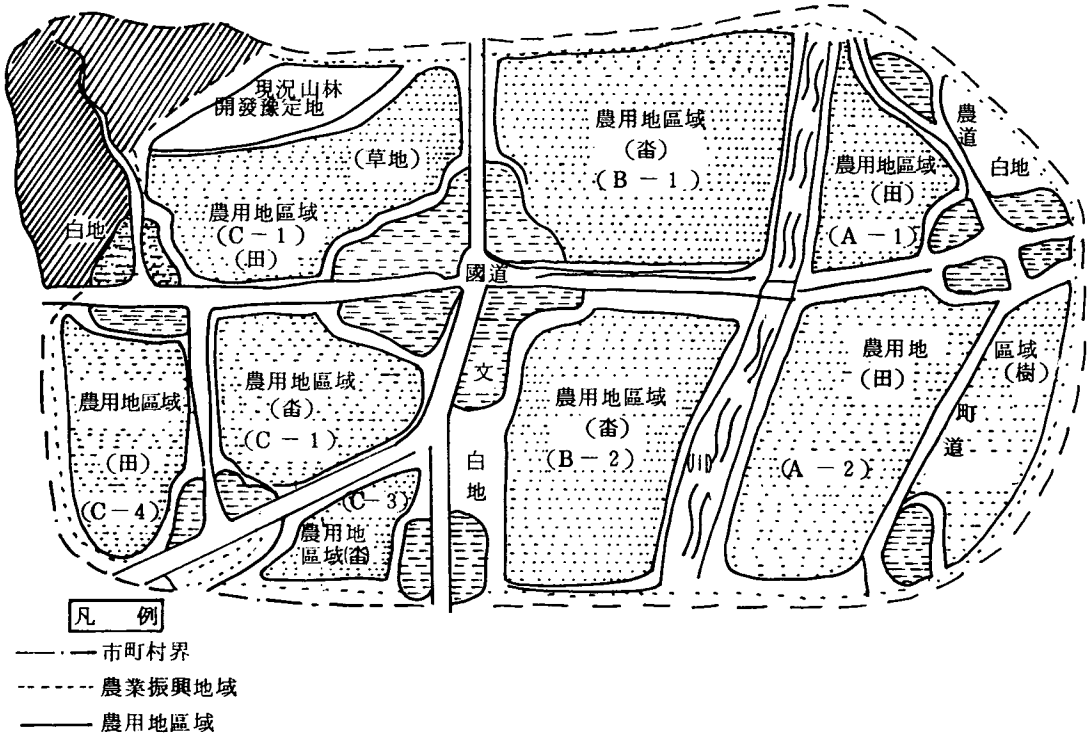
(2) 農用地區域의 表示方法

- ① 大字 또는 字名으로 범위를 표시한다.
- ② 地番을 列記하여 표시한다.
- ③ 구역의 주위를 지번 또는 地物로 연결하여 표시한다.

(除外할 토지의 表示方法)

- ① 제외할 지번을 열기한다.
- ② 주위의 지번을 연결하여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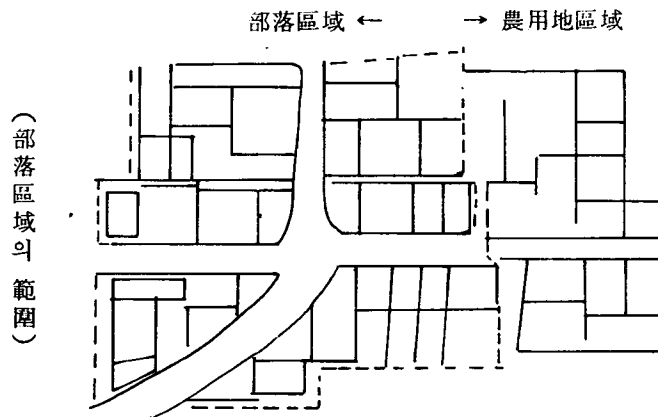
<圖 2> 농업진흥지역과 농용지구역도



나. 部落土地利用構想의 立案方法

(1) 作業의 節次

- ① 部落의 土地利用現況을 2,500 ~ 5,000 분의 1의 도면 또는 字圖로 작성한다.
- ② 인접 집합해서 존재하는 現況宅地(점포, 작업장 등을 포함한다)의 외선을 연결하여 部落구역을 도면에 표시한다.



- ③ 土地利用의 전환이 상당정도 豫상되어 部落土地利用構想을 작성할 필요가 있는 部落을 선정한다.
 - 농업部落의 狀況(部落인구, 세대수, 농가수, 택지면적)
 - 部落토지이용구상의 樹立方針
 - 部落土地利用構想(部落토지이용현황도 · 部落토지이용구상도 첨부)

(2) 部落土地利用構想圖

- ① 선정 한 部落에 대해서는 土地利用現況에 추가하여
 - 5 年이내에 전환예정인 농가주택
 - 생활환경시설용지
 - 농촌공업도입지구 등을 포함하여 「部落居住區域」을 設定한다.
- ② 生活環境施設用地를 部落거주구역에 포함할 때에는 농촌생활환경정비계획과 整合性을 유지할 것.
 - 豫상되는 公共施設등(部落별, 시설명, 규모, 내용)
- ③ 5 年이내에 확실히 전환될 토지로서 농용지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미리 縣의 農振, 農地擔當課와 협의 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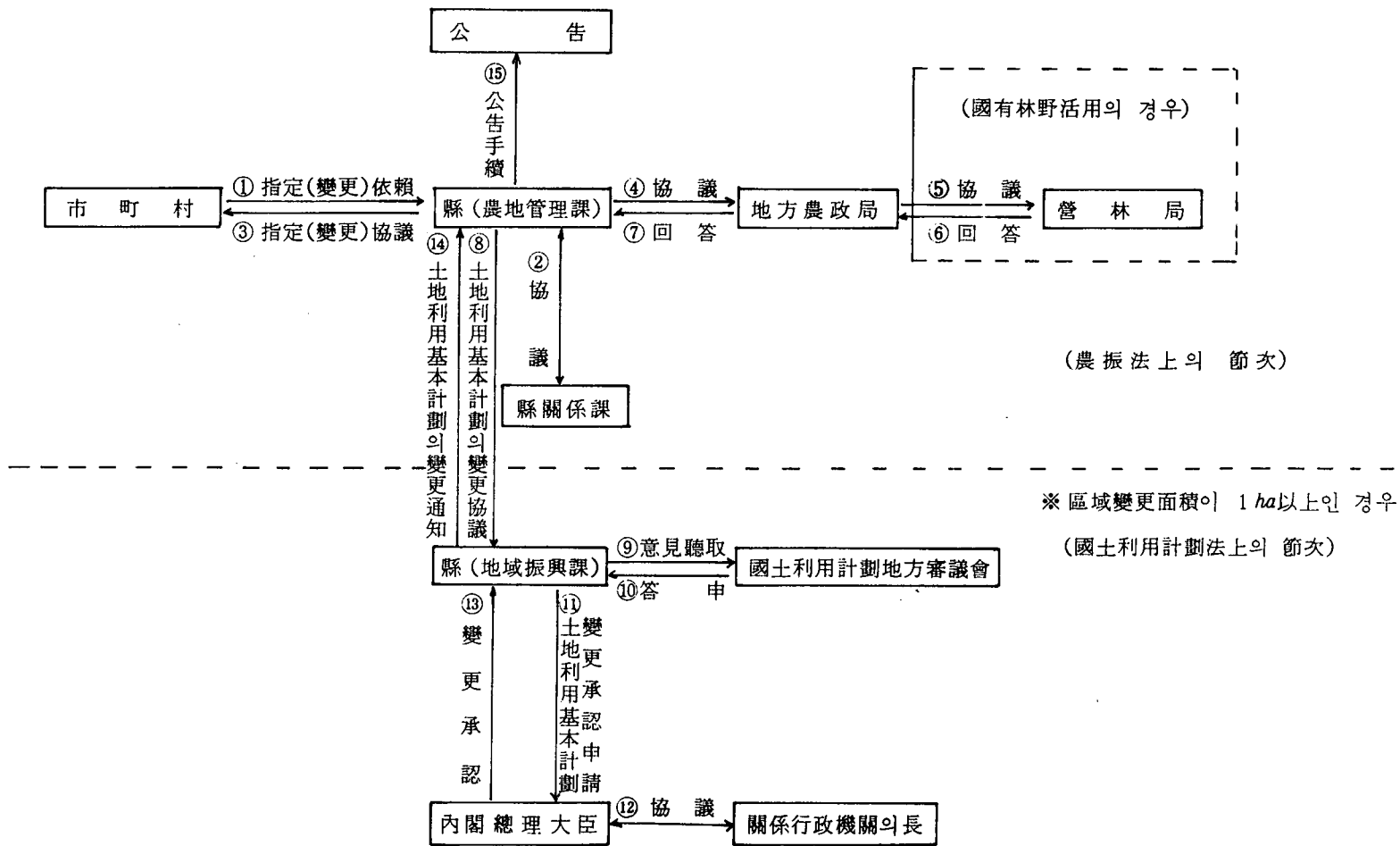
4. 農業振興地域區域範圍의 變更

(사무처리절차)

- (1) 市町村은 농업진흥지역의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知事에게 변경을 의뢰한다.
- (2) 知事は 구역변경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法 제 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市町村과의 협의후 地方農政局(국유임야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營林局을 포함한다)의 변경안에 대한 協議를 한다.
- (3) 知事は 地方農政局 등과 협의를 마친 경우에 구역변경면적이 1 ha이상인 경우는 土地利用基本計劃의 변경(국토이용계획법에서 정하는 농업지역의 변경) 수속을 행한다.
- (4) 縣내부의 조정
 - ① 縣 농지관리과는 토지이용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縣 지역진흥과와 협의한다.
 - ② 縣 지역진흥과는 토지이용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소여의 협의 조정을 한다.
 - ③ 縣 농지관리과는 토지이용기본계획의 변경을 완료한 후 농업진흥지역의 변경에 대하여 縣公報에 고시한다.
- (5) 知事は 公報에 등재한 후 즉시 市町村에 公報의 사본을 송부하고, 農林 大臣에게 보고한다.

* 변경면적이 1 ha 미만인 경우는 「土地利用基本計劃의 變更」 사무는 행하지 않는다.

<圖 3> 農振地域の區域指定(變更)手續圖



5. 農業振興地域 整備計劃의 變更

가. 整備計劃의 變更事由

- ① 農業振興地域整備基本方針의 변경
- ② 農業振興區域의 변경
- ③ 경제사정의 변동과 기타 정세의 추이
 - 농산물 수급사정의 변화
 - 농업기술 진보에 의한 생산적지의 확대 또는 경영방식의 비약적 개선
 - 당해 市町村에서 공업화 도시화의 예상외의 발전 등

나. 變更의 種類

(1) 重要な 變更(경미한 변경이외의 변경)

계획책정의 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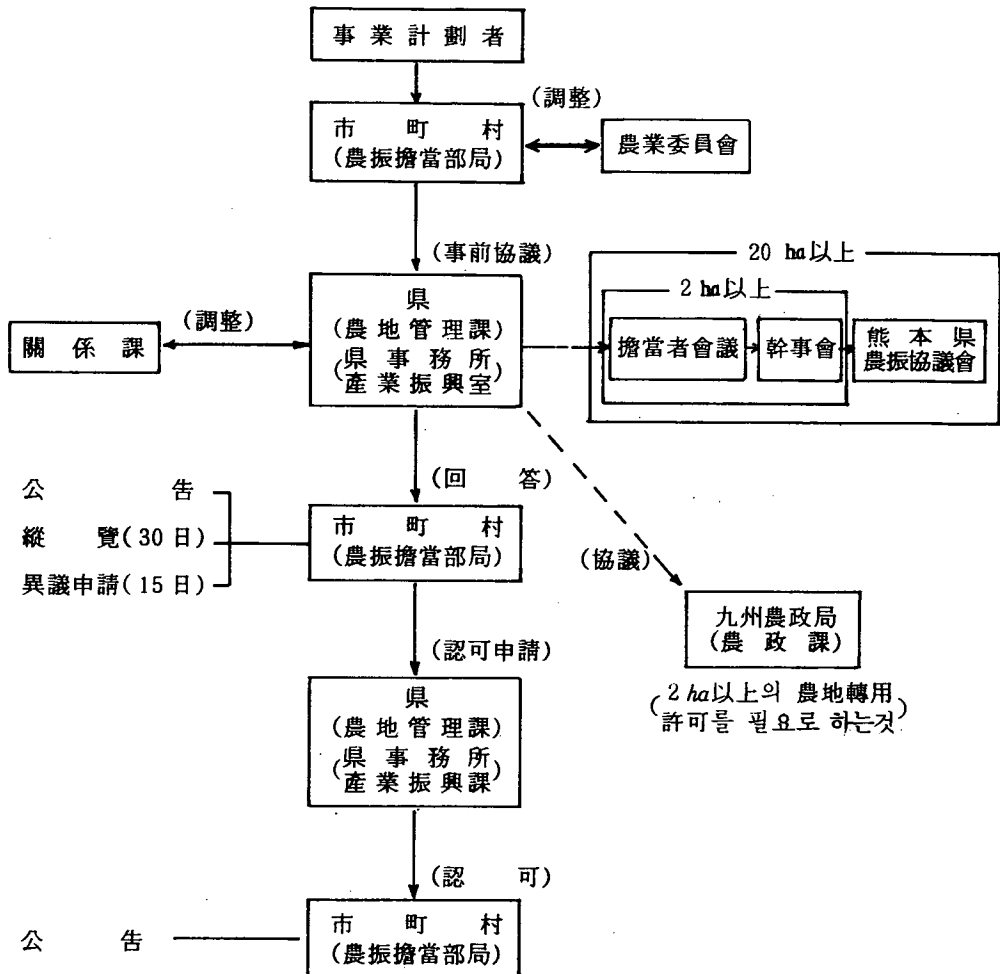
연 4회 협의

(2) 輕微한 變更

- ① 1ha 미만의 用途區分의 변경
- ② 지역명칭의 변경 또는 지번변경에 따른 변경
- ③ 土地受容法 제 2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고, 그 고시에 관계되는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변경
- ④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근원에 근거, 그 권리자가 農業用施設用으로 사용하기
위해 農用地區域에서 제외하기 위한 변경

*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간략한 절차로서 가능하다.

<圖 4> 計劃變更 節次(重要な變更)



6. 農用地域에서의 除外時の 審査基準

가. 計劃變更上 留意해야 할 事項

農用地區域은 장기적·종합적 시점에서 농용지 등으로 이용해야 할 토지에 대해 설정된 것이며, 그 변경에 있어서는 「農業振興地域整備計劃의 변경 및 이의신청 등의 처리에 대하여」(1972. 5. 1, 農政局長 通達)의 記의 第1의 4의(1)에서 규정하는 다음 요건을 전부 갖추 때에만 인정된다. 또 公用公共施設用地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제외하는 경우이어도 다음 요

진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① 농용지구역내의 토지를 농용지구역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농용지구역외에서 代替할 수 있는 토지가 없을 것.
- ② 가능한 한 농용지구역 주변부의 토지등 변경후의 농용지구역의 이용상의 지장이 輕微한 土地를 제외할 것.
- ③ 변경후 농용지구역의 集團性이 보전될 것.
- ④ 변경후 토지이용의 混在가 발생하지 않을 것
- ⑤ 국가의 直轄 또는 補助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농용지개발사업, 농업구조개선사업 등에 의해 토지개발정비사업을 실시중인 지구내의 토지 및 당해사업이 완료할 연도의 익년 부터 기산하여 8년을 경과하지 않는 지구내의 토지(재해복구사업 및 농용지방제사업에 관계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를 농용지구역에서 제외하지 말것.

나. 토지개발사업과의 관련에서 지장이 없을 것.

㉡의 ⑤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다. 농업과의 관련에서 지장이 없을 것

- ① 신청에 관계되는 사업이 取水 또는 排水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수에 의해 農林漁業 또는 公衆衛生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 ② 신청에 관계되는 사업이 開發行爲에 의해 土砂의 유출, 붕괴 및 공해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防災措置를 취할 것.

라. 申請目的 實現의 可能性이 確實할 것

- ① 신청자가 농용지구역에서 제외후 지체없이 신청에 관계되는 토지를 申請目的에 사용할 것이라고 인정될 것.
- ② 신청목적의 실현에 대하여 관계법령등에 의한 許認可를 요하는 경우는 당해 許認可의 가능성이 있을 것.

마. 申請面積이 妥當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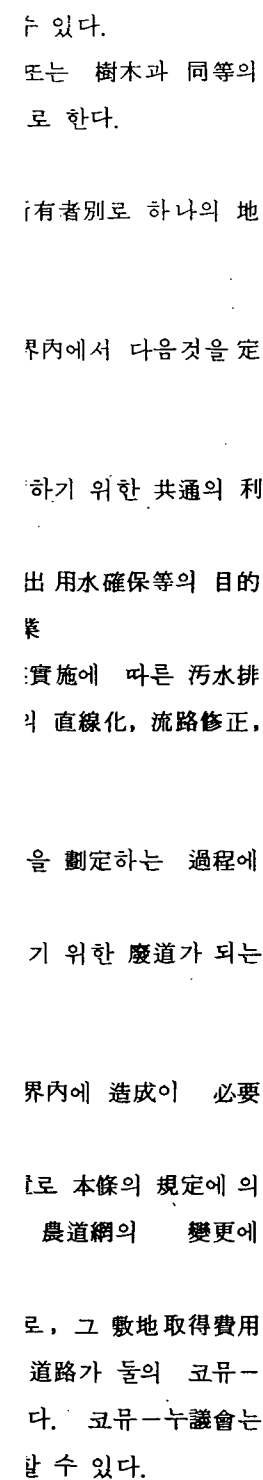
신청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必要한 面積이고, 過大한 面積이 아니라고 인정될 것.

7. 農業振興地域整備計劃의 策定方法・內容등의 變遷

	農業振興地域整備計劃 (1970 ~ 78)	新農業振興地域整備計劃 (1979 ~ 83)	農業・農村整備計劃 (1984 ~)
背景	(1) 高度成長에 따라 지역의 급격한 변화의 결과, 농용지의 改廢, 토지이용의 저하, 농업경영의 조방화가 점차 농촌지역으로 파급하는 현실 (2) 新都市計劃法에 대응하는 농업사이드로부터 영토선언의 필요성 (3) 농정사이드에서 종합적인 시야와 장기적인 전망에 선 土地利用計劃, 생산성이 높은 농업경영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農業振興計劃策定の 必要性	(1) 農振制度는 토지이용계획에 관해서는 효과를 올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토지의 제약적 성격이 강하고 지역의 농업진흥을 도모할 基本計劃으로서의 위치・효과 등이 발휘되고 있지 않다. (2) 제도발족 이후 10년을 경과하여 제반정세가 변화하였다. ① 混住化・兼業化의 진행 ② 농가노동력의 약화 ③ 산촌지역의 과소화 현상 ④ 부락기능의 저하 ⑤ 農地管理의 조방화 ⑥ 농업생산의 재편성 등 (3) 이러한 엄격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진계획의 각종계획을 유기적으로 결합, 금후 농업진흥상의 기본계획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할 필요가 있고, 計劃의 追加・實效性の 確保 등에 의한 새로운 계획수립	(1) 1980 년 農政審資會報告 「80 년대 농정의 기본방향」에서 農村計劃制度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2) 지적을 받은 農林水産省은 1981 년 3 월 「農村計劃制度研究會(私的 諮問機關)」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1983 년 9 월 그 중간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3) 이 中間報告(活力있는 農村地域社會의 形成과 資源의 적정한 利用을 위하여)를 참고하여 농촌계획제도의 실현을 위하여 農振法, 土地改良法의 일부 개정하고, 새롭게 농업・농촌정비계획의 책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景	농산물의 安定的인 供給과 생산성이 높은 農業經營의	농진정비계획이 금후의 농업 및 농촌의 종합적인 진흥정	농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農業生産의 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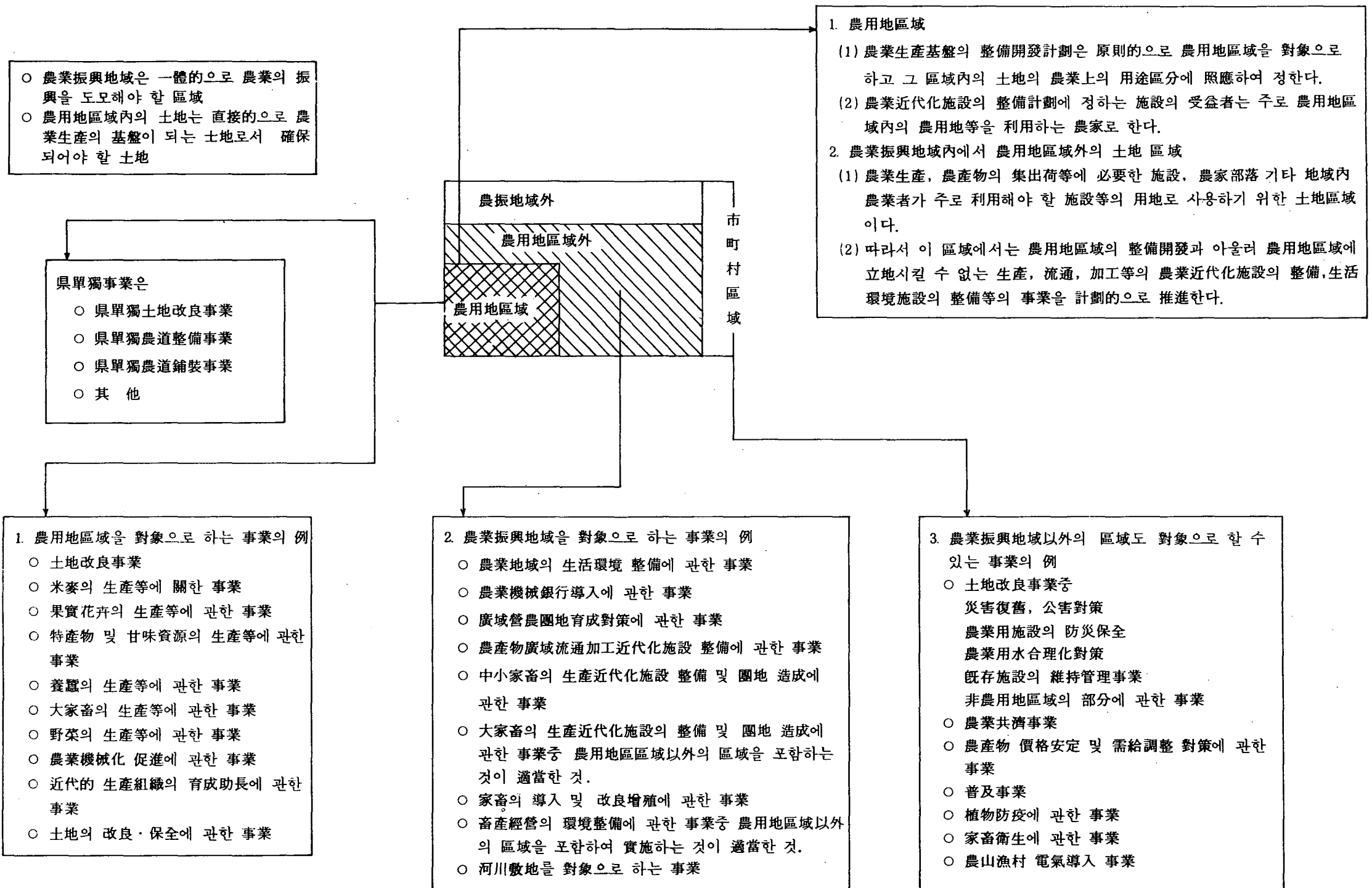
	農業振興地域整備計劃 (1970 ~ 78)	新農業振興地域整備計劃 (1979 ~ 83)	農業・農村整備計劃 (1984 ~)
趣 旨	育成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 산업의 토지이용과의 조정에 유의하면서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할 지역에 대하여 농업상의 토지이용, 기타 농 업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계 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한다.	비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의 확보와 기능의 확충 을 도모하고, 최근의 農產物 需給動向・농촌의 실태・금후 의 發展方向등을 근거로 계 획적인 토지이용을 확보하면 서 농업시책의 計劃的 誘導 를 도모한다.	興, 생활環境의 整備, 地域資 源의 적정한 관리, 안정적인 地域就業機會의 확보등을 중 점으로 하여, 構造政策의 추 진에 의한 농업의 體質強化 와 정주조건이 정비된 활력있 는 농촌사회의 형성을 일체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新 農振計劃을 더욱 발전시켜 각 지역의 특성을 근거로 한 종합적・기본적인 지역계획 으로 한다.
計 劃 의 主 要 內 容	① 農用地利用計劃 ② 農業生産基盤의 정비개발 계획 ③ 농지등의 權利取得의 원활 화 계획 ④ 農業近代化施設의 정비 계획	一 ① 農用地利用計劃 ②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개발 계획 一般 ③ 농지등의 權利取得의 원활화 계획 計 ④ 農業近代化施設의 정비 計劃 ⑤ 農村生活 環境의 정비 계획	一 ① 농용지이용계획 ②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개발 계획 一般 ③ 농업경영의 規模擴大 및 농용지등의 농업상 의 효율적・종합적인 利用促進計劃 計 ④ 농업근대화시설의 정비 계획 ⑤ 就業機會의 確保・擴大 計劃 ⑥ 농촌생활 환경시설의 정비계획
		濃密計劃 ⑥ 혼주화의 진행등에 대 응하는 부락의 계획적 인 토지이용 확보(部 落土地利用 構想)	濃密計劃 ⑦ 혼주화의 진행등에 대 응하는 部落의 계획적 인 土地利用確保(部落 土地利用 構想)

(助 言 指 導)	(協 力)
農業技術指導所 土地改良事業所 農業改良普及所 農事務所	農業委員會 農業協同組合 土地改良區等



빈 면

8. 農業振興地域整備의 推進(補助事業)



빈 면

第2編 農業振興地域整備計劃의 策定要領

빈 면

빈 면

빈 면

様

式

〇〇農業振興地域整備計画書
(農業・農村再編型計画書)

年 月

〇〇県〇〇郡(市) 〇〇町(村)

目 次

1. 地域의 振興方向	
가. 振興의 方向	
나. 計劃의 特色	
2. 農用地利用計劃	
가. 土地利用區分의 方向	
(1) 土地利用의 方向	
가) 土地利用의 構想	
나) 農用地區域의 設定方針	
(2) 農業上의 土地利用 方向	
가) 農用地等利用의 方針	
나) 用途區分의 構想	
나. 農用地利用計劃	
3. 農業生産基盤의 整備開發計劃	
가. 土地基盤의 整備 및 開發의 方向	
나. 土地基盤整備開發計劃	
다. 森林의 整備 其他林業의 振興과의 關聯	
라. 土地·水의 無秩序한 利用防止 關聯事項	
마. 他事業과의 關聯	
4. 農業經營의 規模 擴大 및 農用地等の 農業上の 效率的·綜合的인 利用의 促進計劃	
가. 農業經營의 規模 擴大 및 農用地等の 效率的·綜合的인 利用에 關한 誘導方向	
(1) 中該의 農家の 農業經營 目標	
(2) 農用地等の 農業上の 效率的·綜合的인 利用에 關한 誘導方向	
나. 農業經營의 規模 擴大 및 農用地等の 效率的·綜合的인 利用 促進을 도모하기 위한 方策	
다. 森林整備 其他林業 振興과의 關聯	
라. 土地·水의 無秩序한 利用防止 關聯事項	
5. 農業近代化施設의 整備計劃	
가. 農業近代化施設의 整備方向	
나. 農業近代化施設整備計劃	
다. 森林整備 其他林業 振興과의 關聯	

라. 土地・水の 無秩序한 利用防止 關聯事項	
마. 他事業과의 關聯	
6. 就業機會의 確保・拡大計劃	
가. 農業從事者의 安定的인 就業促進 計劃	
(1) 農業從事者의 安定的인 就業促進의 目標	
(2) 農業從事者의 安定的인 就業促進을 도모하기 위한 方策	
나. 森林整備 其他林業振興과의 關聯	
다. 土地・水の 無秩序한 利用防止 關聯事項	
라. 其他關聯計劃	
(1) 地域農林水産物및 其他地域資源의 利活用に 의한 地域産業의 振興對策	
(2) 企業 誘致對策	
7. 農村生活環境의 整備計劃	
가. 生活環境施設의 整備 目標	
나. 生活環境施設의 整備計劃	
다. 森林整備 其他林業 振興과의 關聯	
라. 土地・水の 無秩序한 利用防止 關聯事項	
마. 他事業과의 關聯	
8. 地域資源의 利用및 管理・保全에 關한 計劃	
가. 地域資源의 有效利用및 適正한 管理・保全의 方向	
나. 地域資源의 有效利用및 適正한 管理・保全을 도모하기 위한 方策	
다. 土地・水の 無秩序한 利用防止 關聯事項	
9. 附 圖	 別添
가. 土地利用計劃圖(附圖 1 號)	
나. 土地基盤整備開發計劃圖(附圖 2 號)	
다. 農業近代化施設整備計劃圖(附圖 3 號)	
라. 農村生活環境整備計劃圖(附圖 4 號)	
別 記 農用地利用計劃	
(1) 農用地區域	
(가) 現況農用地等에 關係되는 農用地區域	
(나) 現況森林, 原野等에 關係되는 農用地區域	
(2) 用途區分	

樣

式

1. 地域의 振興方向

가. 振興의 方向

나. 計劃의 特色

2. 農用地利用計劃

가. 土地利用区分의 方向

(1) 土地 利用의 方向

ㄱ) 土地利用의 構想

單位：ha, %

區分 年次	農用地		農業用施設 用地		森林・原野		住宅地		工場用地		其他		計	
	實數	比率	實數	比率	實數	比率	實數	比率	實數	比率	實數	比率	實數	比率
現在 (○○年)					()	()								100.0
目標					()	()								100.0
增 減														

註：() 內는 混牧林地面積이다.

(나) 農用地區域의 設定方針

ㄱ 現況農用地에 대한 農用地區域의 設定方針

- ① 農業振興地域에서 농업생산, 농업경영, 토지이용,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농용지의 유통화, 농업근대화시설의 정비, 취업기회의 확보·확대, 생활환경의 정비, 지역자원의 이용등에 대한 構想을 記述함으로써 當該地域에서 종합적인 정비방향의 기본적인 원칙을 기술한다.
- ② 農業生産에 있어서는 基礎資料 4의 가에의해 지역의 중점작목의 作付面積(飼料頭羽數), 단위당收量, 생산량등의 目標를 기술한다.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고자하는 사항, 기타 그 내용 및 計劃策定手法등의 특색을 기술한다.
- ① 지역의 위치(범위), 자연적조건, 토지이용현황등 그 지역개황을 간결히 기술하고 아울러 그 지역의 人口 및 産業의 장래전망, 建設, 産業振興, 지역개발계획등을 勘安한 장래의 他用途土地利用의 向上 및 지역농업의 근대화, 지역농업생산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용지 및 農業用施設用地의 確保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總括的으로 記述한다. 더우기 이러한 방향에 근거한 주요한 用途間(農用地, 農業用施設用地, 森林·原野, 住宅地, 工場用地等)의 移動의 구상에 대하여 각각 대략적인 移動量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 ② 基礎資料 2의가의 記載要領에 준하여 記入한다.
- ③ 「森林·原野」欄의 () 내에는 混牧林地面積을 記入한다.

지역내에 있는 現況農用地에 관계되는 農用地區域을 설정하는데 있어서의 基本的인 원칙 및 범위에 대하여 記載例를 참고하여 기술한다.

(記載例)

7. 現況農用地에 대한 農用地區域의 設定方針

本地域內에 있는 現況농용지○○○ha중 대략 다음과 같은 農用地以外的 農用地

様

式

ㄴ. 理況農業用地施設用地에 대한 農用地區域의 設定方針

記	載	要	領
---	---	---	---

約○○○ha

a. 다음에 기재하는 地區 및 施設 등의 整備에 관계되는 農用地

地域, 地區 및 施設 등의 具體的인 名稱 또는 計劃名	位 置 (部落名等)	面 積			備 考
		農 用 地	森 林其他	計	

(註) 위표에 기재하는 지역, 地區 및 施設計劃의 범위는 「農業振興地域의 정비에 관한 法律의 施行에 대하여 (1969년 10월 1일 44農政第5000號農林事務次官依命通達 以下 「44年施行通達」이라한다)의 記 第4의2의(1)에 關係되는 것중b의 部落居住區域에 포함되지 않는 것의 範圍로 한다. 또 同通達의 a에 대해서는 市町村등이 基礎調査등의 結果, 地域, 地區設定의 趣旨와 兩立하는 農業을 행하는것이 困難하다고 판단된 것에 대해 기술한다.

b. 部落土地利用構想의 部落居住區域內의 農用地 約○○○ha

c. 자연적인 條件등으로 보아 농업근대화를 도모하는것이 適當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農用地

(a) 대략적인 경사도 1/○○以上の 農用地 約○○○ha

(b) 都市公害(都市排水등에 의한 汚染)가 심각하여 今後農用地로서의 存續이 困難하다고 인정되는 農用地 約○○○ha

d. 其 他

(a) 中心部落의 整備(中小企業의 誘致, 住宅建設등)에 의해 擴張의 對象이 되는 ○○部落周邊農用地 約○○○ha, ○○部落周邊農用地 約○○○ha

(b) 道路沿線市街地로서 開發이 進行되고 있는 國道○○線의 ○○地先부터 ○○地先까지, 県道○○線의 ○○지점부터 ○○지점까지의 沿線農用地 約○○○ha

(註) 「其他」項의 記載에 있어서는 具體的인 計劃으로서 用地가 결정되어 있든가, 農地轉用이 進行되고 있는등의 事情을 考慮하여 「土地利用의 構想」에서 밝힌 他用途用地로의 需要의 對應을 충분히 기재한다.

地域內에 있는 현황농업용시설용지에 關係되는 農用地區域을 設定할 때에의 基本的인 원칙 및 대략의 範圍에 대해 記載例를 참고로하여 기술한다.

(記載例)

ㄴ. 현황농업용시설용지에 대한 農用地區域의 設定方針

本地域內에 있는 현황농업용시설용지중 ㄱ에서 農用地區를 설정할 방침으로 한 농

樣

式

ㄷ. 現況森林, 原野등에 대한 農用地區域의 設定方針

土地種類	所在(位置)	所有權者 또는管理者	面積	利用豫定 途	備考
			ha		
計					

(2) 農業上の 土地利用 方向

ㄱ) 農用地等 利用의 方針

記	載	要	領
---	---	---	---

農用地에 介在하거나 隣接하는것으로서 當該農用地와 一體의으로 保全할 必要가 있는것 및 대개 다음에 기재하는 농업용시설용지에 대하여 農用地區域을 設定할 方針이다.

農業用施設の 名稱	位 置 (部落名)	面 積	農業用施設の 種類
		ha	
計			

(註) 위표에 記載하는 농업용시설용지는 集團的으로 存在하고 있는 농업용시설용지로서 그 團地規模가 대략 2ha 以上인 것으로 한다.

地域農業의 근대화, 농업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한 필요성등, 現況森林, 原野등에 대하여 農用地區域을 設定할 具體的인 이유 및 대략적인 그 位置, 規模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결하게 기재하고 主要區域별로 분명하게 되도록 기재한다.

특히 現在事業實施中 또는 調査計劃中인 지역이외의 森林, 原野등에 대하여 農用地區域을 設定할 때에는 그 개발가능성등을 충분히 밝힌다.

또 이때에는 일반적인 森林, 原野뿐 아니라 44年施行通連의 記의 第4의 2의(1)의 1의 (1)의 a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地域, 地區등으로 現在農用地등으로 利用되지 않지만 今後 그 地域, 地區등의 設定趣旨와 兩立할 수 있는 農業을 행하기위한 農用地區域을 設定하려는 때에는 그 地區等에 대해서도 함께 기재 하여야 한다.

- ① 「土地種類」欄을 「林地」「原野」등과 같이 記載하고 특히 地域, 地區에 관계되는 土地에 대해서는 具體的인 名稱을 記入한다.
- ② 「所在」欄은 地區・區域番號(別記農用地利用計劃의 (1)의 (가)에서 定하는 番號, 以下 같다.)를 記入한다. 또 必要에 따라 地番 또는 林班番號를 記入한다.
- ③ 「所有權者 또는 管理者」欄은 「國有化」「公有化」「私有化」등과같이 記入한다.
- ④ 林地的 경우는 備考欄에 「人工林」「天然林」등과같이 林地的 種類를 記入하고, 「人工林」의 경우는 植林된 年次 및 伐期를 付記한다.

- ① 農用地區域을 記定하려는 農用地등에 대한 利用狀況 및 農業生産의 目標등과의 關聯을 포함한 장래에 있어서 地域全體의 농용지등의 利用方針을 간결히 기재하고, 必要하면 地域內를 小區分하여 그 地域 (예를들면 市町村程度를 單位로하는 區分, 이하「地區」라 한다) 별도 기재한다.

또 混牧林利用의 增大가 예상될때는 混牧林地로서의 利用의 必要性등에 대하여 付記한다.

樣

式

單位：ha

區 分 地區名	農 地			採草放牧地			混牧林地			農業用施設 用 地			計			森林・ 原野等
	現 況	將 來	增 減	現 況	將 來	增 減	現 況	將 來	增 減	現 況	將 來	增 減	現 況	將 來	增 減	現 況
計																

(4) 用途區分の 構想

7. ○○地區

8. ○○地區

② 表중의 「森林・原野等」欄을 現況森林, 原野, 難種地등의 面積을 記入하고, 44 年施行通達의 記의第 4 의 2 의 (1) 의 地域, 面積을 괄호내에 付記한다.

③ 計의 「現況」欄과 森林・原野등의 「現況」欄의 合計는 計의 「將來」欄에 一致한다.

地區內에서 農用地區域을 設定하려는 農용지등을 水系, 地形등에 따라 필요하면 道路, 鐵道, 河川등의 일정한 地物, 施設, 工作物로부터의 距離 및 方向을 이용함으로써 農用地群 또는 農業用施設用地群으로서 대략적인 그 位置 및 規模를 표시하고 그 農용지군 또는 농업용시설용지군 별로 현황용도의 분포, 토지기반정비상황 및 農용지 또는 농업용시설용지의 조건등의 개황과 장래용도의 構想을 간결히 기술한다.

ㄱ에 준하여 기술한다.

(記載例)

○○地區

- a. ○○水系에 속하는 平坦部の 農용지 약 ○○ha에 대해서는 汎用田으로서 이미 용배수조건의 정비가 상당히 進行되어 있고, 그 대부분이 團地性○○ha以上 傾斜度 1/○○未滿으로 構成되어, 今後 畚田轉換에 대응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農地로서의 利用을 권장한다.
- b. ○○用支流域에 속하는 縣道○○線의 西部緩傾斜地帶의 약 ○○ha의 農용지는 그 1/3이 畚으로, 2/3가 田으로 利用되고, 畚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分산 경사도 1/○○以上이며 機械化條件도 갖추고 있지 않아 畚에서田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야채생산의 主산지화계획의 基盤으로서 農地의 利用을 促進한다.
- c. ○○台地에 展開하는 農용지 약 ○○ha는 總體의으로는 田이지만 樹園地, 草地와 混在가 넉리 나타나 農業生産의 合理化를 저해하고 있어 樹園地중 果樹에 대해서는 기존果樹園地密度가 높은 町道○○線의 在側丘陵部에 집단화를 추진하고 桑園에 대해서는 右側의 丘陵部에 집단화한다. 또 草地에 대해서는 大型 機械化를 前提로하여 ○○山麓南面緩傾斜地帶에 集團化하고 이와함께 인접하여

樣

式

나. 農用地利用計劃

別記대로 한다.

3. 農業生産基盤의 整備開發計劃

가. 土地基盤 整備 및 開發方向

(가) ○○地區

(나) ○○地區

나. 土地基盤整備開發計劃

事業種類	事業概要	受益範圍		對圖番號	備考
		受益地域	受益面積		
			ha		

記	載	要	領
			존재하는 林地 약 〇〇ha를 開發하고 大規模草地를 造成하는등 농지의 집 단화 를 基軸으로하여 토지이용의 再編을 추진하는것을 基本으로 한다. d. 〇〇部落의 周邊에 展開하는 농용지등 약 〇〇ha는 田과 畜舍와의 이용이 混 在하여 田의 농업생산의 합리화를 저해하고, 또 養豚經營이 農村部落에 生産公 를 미치고 있으므로 양돈경영을 위한 畜舍는 隣接하는 〇〇山麓의 北面緩傾斜 地帶에 集團化하고 또 〇〇部落周邊을 大型機械化가 可能하도록 田으로 集團化 를 도모하고 양돈경영에서 생기는 糞尿를 田으로 환원하여 田作經營과 養豚經 營의 유기적인結合을 도모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추진한다. 地域內에 있는 農用地중 농용지구역에 포함되는 기존농용지의 용도별토지조건 및 조건별 면적(團地性, 傾斜度等), 토지기반정비상황(總農用地區域內의 農用地面積중 정비완료 면 적등)에 대하여 간결히 기술하는 한편, 農用地利用計劃에 따라 수요의 동향에 대응할 수 農業生産構造의 確立을 도모하고 今後 추진해야할 기존농용지의 정비, 未墾地の 開發 및 농용지의 보전에 대한 方向을 정비하며 開發面積을 포함하여 地域全體에 대하여 總括的 으로 간결히 기술하고 아울러 다음과 같이 地區별로 土地基盤의 정비, 開發의 구상을 기 술한다. 지구내의 농용지구역에서 計劃하려고 하는 토지기반의 정비, 개발에 대하여 그 목적, 基幹的인 事業의 種類및 事業의 概要을 內容으로한 총괄적인 구상을 간결히 기술한다. 또 地區의 범위가 廣域인 등으로 構想의 명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地域내를 水系, 地形等에 따라 區分하고 그 區域별로 구상을 기술한다. (가)에 준하여 기술한다. ① 「事業種類」欄은 「農業振興地域 整備에 관한 法律의 運用에 대하여」(1969년 10 월 1일 44農政 第5001號 農政局長通達, 以下「44年運用通達」이라한다.)의 記의第 3의1의(4)의1에 대해 記入한다. ② 「事業概要」欄에는 「用水改良」의 경우는 「用水路의 新設改修, 田灌施設整備」와 같이, 「農道整備」의 경우는 「農道網整備를 위한 改修, 新設, 鋪裝」과 같이, 「農用地造成」의 경우는 「樹園地造成, 草地造成」과 같이, 각각의 事業種類별로 주 요공사내용을 記入한다. ③ 「受益地區」欄에는 受益農用地區域의 地區・區域番號를 기입한다. 또 受益이 2以上 의 地區에 걸치는 경우는 地區・區域番號를 列記한다.

다. 森林整備 其他 林業振興과의 關聯

라. 土地・水の 無秩序한 利用防止 關聯事項

마. 他事業과의 關聯

4. 農業經營의 規模擴大 및 農用地 등의 農業上的 效率的・綜合的인 利用의 促進計劃

가. 農業經營의 規模擴大 및 農用地 등의 效率的・綜合的인 利用에 관한 誘導方向

(1) 中核的 農家の 農業經營 目標

(가) ○○地區

(나) ○○地區

	營農類型	目標規模	作目構成	戶數 (經營體數)	關係 部落番號	流動化目標 面積
個人經營						ha
協業經營						

註：中核的 農家 또는 中核的 農家が 참가하고 있는 協業經營의 現況 및 目標이다.

- ④ 「代圖番號」欄은 일련번호 (1, 2, 3……)를記入한다.
- ⑤ 備考欄에는 구체적인 보조·융자사업의 도입에 대하여 지역관계자의 意向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는 補助事業에는 구체적인 事業名, 融資事業에서는 예를들면 農林漁業金融 公庫資金, 農業近代化資金等 그 자금명을 밝힌다.

農業振興地域整備基本方針에서 결정되어 있는 광역적인 전지에서 행하는 것이 적당 토지기반의 정비, 개발에 관한 구상 및 현재 실시중 또는 실시가 계획되어 있는 광역적인 토지기반정비사업 및 治水, 發電, 上水道, 一般道路等과의 관계에 대하여 기술한다.

- ① 中核的農家(농업에 대한 강한 意欲과 높은 경영능력을 가진 농가. 이하같다.)의 농업 경영目標 및 그 육성방향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기술한다.
- ② 食品産業과 관련한 加工原材料 農産物을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별도로 당해작목의 생산농가의 농업경영 목표 및 육성방향에 대하여 간결하게 기술한다.
- ③ 필요에 따라 地區별로도 기술한다.
- ④ 中核的農家の 농업경영목표에 대하여 기술한다.
- ⑤ 作成시에는 農業改良普及所등의 지도를 받고 동시에 部落카드를 참고로하여 기술한다.
- ⑥ 「營農類型」欄은 「野菜 + 果樹」, 「養蠶 + 養豚」와 같이 주요작목을 기술한다.
- ⑦ 「關係部落番號」欄은 主要關係部落(그 目標戶數가 全目標戶數의 약8 할을 접하는 部落. 1 部落에서 8 할미만인 경우는 그 目標戶數의 합계가 약8 할을 접하는 上位複數의 部落)의 部落番號(基礎資料의 시정촌정비계획의 책정 경영의 2에서 정하는 번호. 이하같다.)을 기입한다. 또 關係部落이 다수인 경우는 「1 ~ 10, 13 ~ 18」과 같이, 또 關係部落이 全部落에 미치는 경우는 「全部落」이라고 기재해도 상관없다.
- ⑧ 中核的農家の 목표규모, 호수등을 달성하기 위한 流動化目標面積은 「目標規模」와 「戶數」를 곱한것에서 基礎資料第6의2의 「平均經營規模」와 「戶數」를 곱한 것을 공제할 것으로 農用地開發, 作業受委託, 遊休地의 利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農用地等の 農業上の 效率的・綜合的인 利用에 관한 誘導方向

(가) ○○地區

(나) ○○地區

나. 農業經營의 規模擴大 및 農用地等の 效率的・綜合的인 利用의 促進을 위한 方策

다. 森林整備 其他林業 振興과의 關聯

라. 土地・水의 無秩序한 利用防止 關聯事項

5. 農業近代化施設의 整備計劃

가. 農業近代化施設의 整備方向

(1) ○○地區

(2) ○○地區

⑨ 中核的農家가 참여하고 있는 協業經營에 대해서는 協業經營의 經營類型, 規模等에 대하여 기술하고, 「戶數」欄에는 協業經營數를 기술한다.

農用地等の 農業상의 효율적・종합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용지등의 流動化 農작업의 수위탁, 農작업의 공동화, 地域농업집단, 農業생산조직, 지방의 유지증산등의 誘導 方向을 概括하고, 아울러 필요에 따라 지구별로 기술한다.

또 數値로써 밝히는 경우는 아래표를 참고할 것.

	農用地等 의 流動化	農作業의 受委託	農作業의 共同化	耕 地 利 用 率	裏作導入	
	ha	戶 ha	組織, 戶	%	ha	
現在(年)						
1990年						
1995年						

- ① 各의 誘導方向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지역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推進하려는 方策을 기술한다.
- ② 方策별로 필요한 調査 및 弘報活動, 對象者, 地域범위(部落名, 地區名等), 推進體制(方策推進에 있어서 指導의 役割을 담당할자등)를 포함하여 推進에 있어서의 원칙을 기술한다.
- ③ 方策의 種類에 대해서는 「農業振興地域整備에 관한 法律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의 施行에 대하여 (1984年12월5일59構改C第768號農林水產事務次官依命 通達. 이하 「59年施行通達」이라한다.) 의記의第2의3의(1)을 参照

轉作에 의한 地域농업생산의 재편성方向을 근거로 地域의 主要작목별로 목표로하는 農業生産技術體系 및 農業生産組織의 원칙 및 生産에서 유통, 가공에 이르는 일체적인 시설정비의 구상을 포함하여 地域전체에 대해 農業近代化施設 整備의 基本의 方向을 간결하게 기술하고, 地域별로 구체적인 구상으로서 분명히 기술한다.

구체적인 구상으로서 기술하는데 있어서 예컨대 地區內를 數個로 區分하여 명확화를 期하여야 한다.

樣

式

나. 農業近代化施設整備計劃

施設の種類	位置 및 規模	受 益 範 圍			利用組織	對圖番號	備 考
		受益地區	受益面積	受益戶數			
			ha	戶			

다. 森林整備 其他林業振興과의 關聯

라. 土地・水の 無秩序한 利用防止 關聯事項

마. 他事業과의 關聯

6. 就業檢會의 確保・擴大計劃

1 農業從事者の 安定的인 就業의 促進計劃

(1) 農業從事者の 安定的인 就業促進의 目標

(單位：人)

區 分		從 事 者								
I	II	市 町 村 內			市 町 村 外			合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恒 常 的 動 務	○○業 △△業									
計										
自 營 兼 業										
計										
出 家										
計										
日 雇・臨 時 雇										
計										
總 計										

- ① 「施設の種類」欄은 44年運用通達の 記의第3의1의(6)의1에 따라 기입한다.
- ② 施設の種類名에는 구체적인 이용목적이 분명하도록 「稻作」, 「田作」, 「채소」, 「화훼」, 「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位置」欄은 字名을 기입한다.
- ④ 「受益地區」欄은 受益農用地區域의 地區・區域番號를 기입한다. 또 受益이 2以上の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는 地區・區域番號를 列記한다.
- ⑤ 「利用組織」欄은 당해시설을 관리이용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조직을 기입한다. 새로 組織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경우는 「(新規)」로 記入하고, 조직의 종류를 기입한다.
- ⑥ 「對圖番號」欄은 일련의 番號(①, ②, ③ ……)를 記入한다.
- ⑦ 備考欄은 第3의2의記載要領의 ⑤에 준하여 기입한다.

農業振興地域整備基本方針에 정해져 있는 광역적인 건지에서 정하는것이 적당한 농업 근대화시설의 정비에 관한 구상 및 현재 실시중, 또는 실시가 계획되고 있는 광역적인 농업 근대화시설의 정비사업과의 관련에 대하여 기술한다.

- ① 動態調査等에 의한 農業従事者の 出家, 日雇等の 不安定事業의 취업실태를 근거로 농업종사자의 就業改善의 目標를 기술한다.

또 필요에 따라 취업촉진목표와 농업구조개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 ② 基礎資料等8의 가의 記載要領에 준하여 기입한다.
- ③ 이외에 필요에 따라 就業先, 男女別就業人數의 目標등을 도시한 「就業地圖」를 作成한다.

(參考) ○○町의 就業現狀과 將來目標(就業地圖)

(2) 農業從事者의 安定的인 就業促進을 위한 方策

나. 森林整備 其他 林業振興과의 關聯

다. 土地・水의 無秩序한 利用防止 關聯事項

라. 其他 關聯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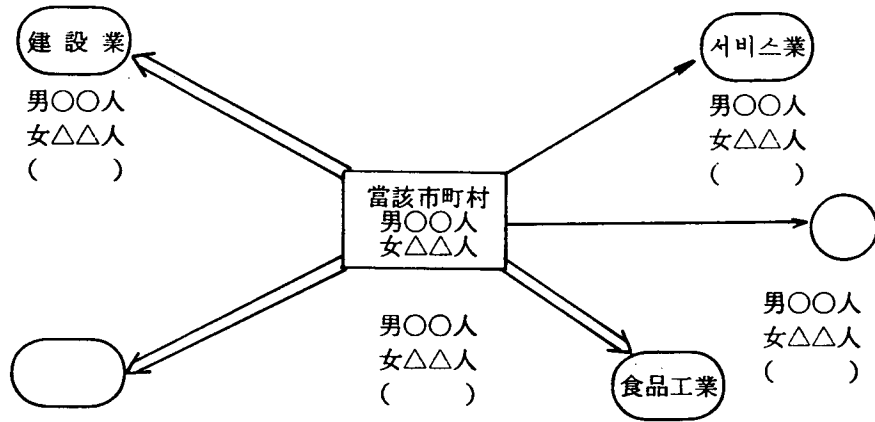
(1) 地域農林水産物 및 其他地域資源의 利用에 의한 地域産業의 振興對策

(2) 企業誘致對策

7. 農村生活環境施設의 整備計劃

가. 生活環境施設整備의 目標

(例) 就 業 地 圖



()内는 農業從事者の 人數이다.

- ① 當該地域에서 증점적으로 강구해야할 方策의 개요(實施時期, 方策推進시에 指導的 役割을 해야할 것을 포함한다.)를 기술한다.
- ② 方策의 種類에 대해서는 59年 施行通達의 記의 第2의 3의 (2)를 参照

必要에 따라 기술한다.

- ① 必要에 따라 기술한다.
- ② 企業誘致構想이 있는 경우는 誘致를 위한 活動, 施策을 기술한다.
- ③ 用地確保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술한다.

지역내에서 生活環境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촌생활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의 생활개선활동등의 지역활동, 시설관리의 장래방향을 포함한 농촌생활환경의 개선방향 및 농촌생활환경정비의 목표를 安全性, 保健性, 便利性, 快適性 및 文化性의 관점에서 기술한다.

樣

式

나. 生活環境施設の 整備計劃

施設の 種類	位置 및 規模	受 益 範 圍		對圖番號	備 考
		關係部落番號	受益戶數		

다. 森林整備 其他 林業振興과의 關聯

라. 土地・水の 無秩序한 利用防止 關聯事項

마. 他事業과의 關聯

8. 地域資源의 利用 및 管理・保全에 관한 計劃

가. 地域資源의 有効利用 및 適正한 管理・保全의 方向

地域資源의 名稱等	地域資源의 有効利用 및 適正한 管理・保全 方向

나. 地域資源의 有効利用 및 適正한 管理・保全을 위한 方策

다. 土地・水の 無秩序한 利用防止 關聯事項

(參考) 地域資源의 利用概念圖

記	載	要	領
---	---	---	---

- ① 當該地域에서 生活環境의 整備를 도모한다는 觀點에서 필요한 施設에 대하여 기입한다.
- ② 「施設의 種類」欄은 「農業振興地域 整備에 관한 法律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의 運用에 대하여」(1984년 12월 5일 59 構改C 第 768 號 構造改善局長 通達. 以下 「59 年 運用通達」이라 한다.)의 記의 第 2 의 3 의 (2)에 따라 記入한다.
- ③ 「關係部落番號」欄은 主要關係 部落의 部落番號를 基礎資料의 第 9 의 1 의 記載要領의 ②와같이 記入한다.
- ④ 「對圖番號」欄은 일련번호(①, ②, ③……)를 記入한다.
- ⑤ 備考欄은 第 3 의 2 의 記載要領 ⑤에 準하여 記入한다.

현재 실시중 또는 實施가 計劃되어 있는 農道整備事業, 農業部落排水事業等의 土地基盤整備事業, 一般道路整備事業等 他事業과의 關聯에 대하여 기술한다.

- ① 地域資源의 利用(未利用, 低利用을 포함한다.) 및 관리·보전현상을 근거로 금후 有効한 이용 및 적정한 관리·보전의 方向을 기술한다.
- ② 지역에 부존하는 地資源을 폭넓게 파악한다.

(記 載 例)

地域資源의 名稱等	地域資源의 有效利用 및 管理·保全의 方向
○○ 平 의 森 林	天然林의 貴重한 自然地域이며 水源涵양의 重要한 機能을 가지고 있는것부터 景觀保全을 도모한다.
□□川의 中流地域	농용지·삼림등의 緣資源의 維持培養을 도모하고 地下水涵양등을 행하고 있는 農地整備를 추진하고, 土壤 侵食·流亡의 防止를 도모한다.
△△地區의 畵細工	전통적인 民藝品으로서 그 繼承을 도모하고 觀光品으로 育成을 도모한다.
× × 城	修復·管理에 노력하고 文化, 觀光面에서의 利用을 추진한다.

- ① 가의 方向을 실현하기 위한 具體的方策의 개요를 기술한다.
- ② 具體的方策에 대해서는 要領 第 5 의 6 의 (1)을 参照하고, 가에서 언급한 諸資源의 有効이용 및 관리·보전의 方向을 근거로 기술한다.
- ③ 필요에 따라 지역資源의 利用概念圖를 作成한다.

樣

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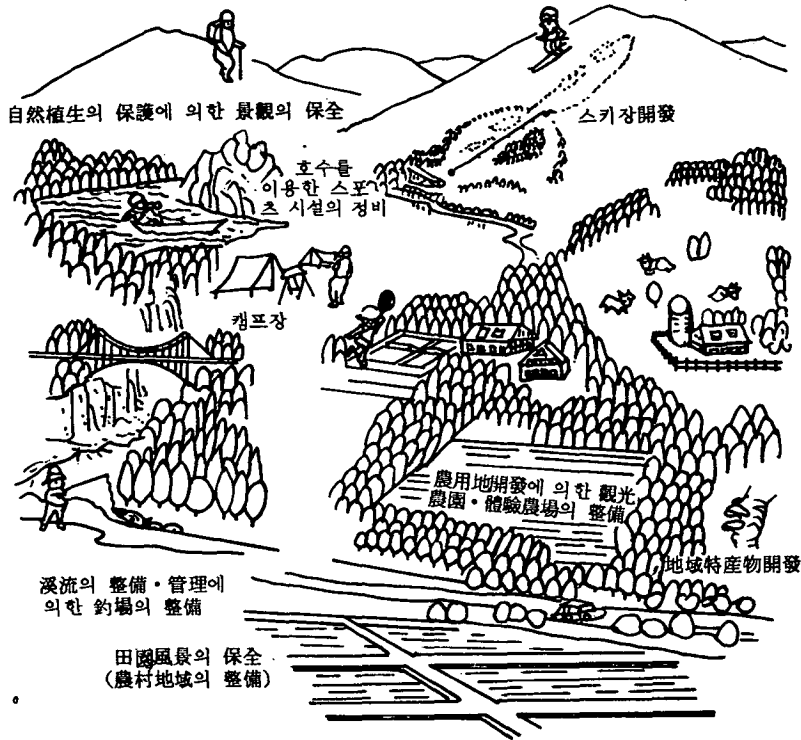
9. 附 圖
別 添

가. 土地利用計劃圖(附圖 1 號)

나. 土地基盤整備計劃圖(附圖 2 號)

다. 農業近代化施設整備計劃圖(附圖 3 號)

라. 農村生活環境整備計劃圖(附圖 4 號)



整備計劃書의 附圖로서 10,000 분의 1 ~ 25,000 분의 1 의 市町村地形圖를 이용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圖面을 作成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또 圖面은 必要에 따라 附圖○號의 1, 2 등과 같이 分割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附圖 2 號, 3 號, 4 號, 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장으로 작성해도 상관없다.

農業振興地域界, 地區界, 區域界 및 地區・區域番號, 그리고 用途區分界 및 用途를 지정한 圖面.

事業種類名(計劃의 對圖番號) 및 事業種類별 大략적인 受益範圍를 밝힌 圖面.

施設種類名(計劃의 對圖番號) 및 施設의 大략적인 設置場所와 受益範圍를 밝힌 圖面.

施設種類名(計劃의 對圖番號) 및 施設의 大략적인 設置場所를 밝힌 圖面.

様

式

別 記 農用地利用計劃

(1) 農用地區域

(2) 現況農用地等關係農用地區域

(3) 現況森林、原野等關係農用地區域

記 載 要 領

今後 農用地等으로 이용해야 할 現況農用地等 및 이러한 토지에 포함 또는 인접한 現況森林, 原野等으로 將來農用地等으로 이용해야 할 토지를 일정구역별로 표시한다.

그리고 農用地區域의 表示는 44年運用通達의 第3의 1의 (3)에 근거하지만 計劃의 明確化, 簡略化를 도모하기 위하여 地區內의 토지별 A, B, C와같이 일련번호를 붙이고, 하나의 地區에 포함되는 개개의 農用地區域별로도 일련번호를 붙여서 표시하여야 한다.

(記載例)

① 現況農用地等關係農用地區域

아래표의 「區域의 範圍」欄에 기재된 구역내에 포함되는 토지중 「除外土地」欄에 기재된 토지이외의 토지를 農用地區域으로 한다.

地區・區域番	區域의 範圍	除外土地	備考
A - 1	○○川左岸線, ○○市와 ○○町の 境界線, 縣道○○線에 둘러싸인 區域	大字○○의 ○○番地, ○○番地에서 ○○番地の 土地	
A - 2	大字○○	國道○○號線의 ○○지점에서 ○○지점까지의 道路數地에서 兩側○○m의 區域內의 土地	
A - 3	大字○○	町道○○線, ○○線, ○○線과 ○○川右岸線에 둘러싸인 區域內의 土地	

(記載上の 注意)

1. 「위표중에서 사용되는 일정한 地物, 施設, 工作物은 년 월 일 현재를 말한다.」를 반드시 付記할것.
2. 「區域의 範圍」의 크기는 表示手法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農用地等이 인접하여 存在하는 것은 分斷시키지않고 가능한한 크게 區分하는것이 소망스럽다. 대략적인 기준으로는 「大字」정도로 한다.
3. 農用地區域에 國有地를 포함하고있는 경우는 備考欄에 그 위치 및 규모를 밝히고 法第11條第10項의 承認年月日과 番號를 기입한다. 단지 法第11條의 1項의 公告시에는 기입할 필요는 없다.
4. 表示를 할때에 「區域의 範圍」 「除外土地」 등 文章表示에는 明確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 部分에 대하여 대략 500 분의 1 ~ 2,500 분의 1 程度의 平面度를 併用하여 표시의 明確化를 기할것.

現況農用地等에서 떨어져 존재하는 現況森林, 原野等중 將來農用地等으로 이용해야 할 토지를 표시한다.

様

式

(2) 用途区分

記 載 要 領

(記載例)

② 現況森林, 原野等 關係農用地區域

아래 표에 기재하는 區域의土地는 農用地區域으로 한다.

地區・區域 番 號	區 域	備 考
A - 21	大字○○의 ○○番地, ○○番地, ○○番地の 土地	
A - 22	大字○○의 ○○番地, ○○番地, ○○番地와 町道○ ○線에 둘러싸인 區域內的 土地	
B - 20	林班番號○○에서 ○○까지와 ○○番地の 土地	

(記載上的 注意)

1. 위표중의 「地區・區域番號」欄의 區域番號는 ①의 表에서 사용된 지구별 區域番號의 末尾에 계속된 一連番號를 부여할것.
2. 備考欄은 ①의 記載上的 注意의 3에 準하여 기입한다.

用途區分의 表示는 農用地區域의 表示에서 사용한 「地區・區域番號」를 사용하여 개개의 農用地區域별로 그에 포함되는 土地의 今後 農業上的 용도(農地, 採草放牧地, 混牧林地, 農業用施設用地)가 분명하도록 44年運用通達의 第3의 1의(3)의 ①에 근거하여 表示한다.

様

式

(記載例)

아래 표의 「地區·區域番號」關係農用地區域內的 農業上的 用途는 「用途區分」欄에 기재하는 대로 한다.

地區·區域番號	用 途 區 分
A-1	農 地 : 大字○○의○○番地, ○○番地, ○○番地에서 ○○番地, ○○番地 및 ○○用左岸線과 農用地區域界線에 둘러싸인 區域 農業用施設用地 : 大字○○의 ○○番地, ○○番地, ○○番地 및 番地 採草放牧地 : 上記農地 또는 農業用施設用地로서 區分の 區域以外的 區域
A-2	農 地 : 下記農業用施設用地로서 區分된 區域以外的 區域 農業用施設用地 : 大字○○의 ○○番地, ○○番地 및 ○○番地 그리 고 大字○○의 ○○番地, ○○番地, ○○番地 및 ○○番地
B-1	農 地 : 全區域
B-2	農業用施設用地 : 大字○○의 ○○番地에서 ○○番地까지 및 ○○番地

빈 면

〈附〉「農業・農村再編型」計劃書基礎資料의 記載要領

빈 면

様

式

〇〇農業振興地域整備計画書基礎資料
(農業・農村再編型計画書基礎資料)

年 月

〇〇県〇〇郡(市) 〇〇町(村)

目 次

市町村 整備計劃策定の 經緯	
가. 策定經緯	
나. 部落區域	
部落區域圖	
1. 地域의 概況	
가. 立地條件	
나. 人口 및 産業經濟의 動向 및 展望	
(1) 總人口, 世帶數 및 産業別 就業人口의 動向 및 展望	
(2) 産業別 生産額의 動向 및 展望	
다. 地域의 開發構想	
라. 農業關係法令에 根據한 各種 農業振興計劃의 概要	
마. 農業關係 以外의 法令에 根據한 地域等의 指定狀況	
2. 土地利用의 動向等	
가. 土地利用의 動向	
(1) 農業振興地域의 土地利用 動向	
(2) 農地開發可能地 面積	
(3) 森林의 混牧林地로서의 利用可能性	
(4) 農振白地地域의 分類	
農振白地地域 分類圖	
나. 部落의 土地利用 現況等	
(1) 農業部落의 狀況	
(2) 部落土地利用 構想의 樹立方針	
(3) 部落土地利用 構想	
(4) 部落土地利用 構想의 擔保措置	
部落土地利用 現況圖	
部落土地利用 構想圖	
3. 農業·農村 再編構想	
가. 轉作의 重點作目	

- 나. 規模擴大의 方向 및 作付地의 團地化等 合理的인 土地利用等의 推進方向
- 다. 轉作推進을 爲한 條件整備
4. 農業生産의 現狀과 今後의 方向
- 가. 重點作目의 概要
- 나. 農業生産의 現狀과 目標
- 다. 集出荷 販賣計劃
- (1) 農産物의 出荷量 및 出荷率의 動向
- (2) 集出荷販賣의 現狀 및 改善目標
- 라. 農業生産技術의 改善目標
5. 農業生産基盤의 現狀
- 가. 農地의 整備率
- 나. 水田의 排水現狀
- 다. 農業生産基盤의 整備開發關聯 各種 事業의 實施狀況
- 農業生産基盤 整備狀況圖
6. 農業經營의 規模擴大 및 農用地等 農業上의 效果的·綜合的인 利用現狀
- 가. 農家戶數의 動向 및 展望
- 나. 中核的 農家의 營農類型 現況
- 다. 農用地等의 流動化 現狀
- (1) 權利移動의 動向
- (2) 權利移動의 動向 — 農用地等의 流動化諸方策別
- 라. 農作業의 受委託 및 共同化, 地力의 維持增進, 耕地利用率, 裏作導入等의 現狀
- 마. 地域農業集團 및 農業生産組織等의 組織化 現狀
- 바. 農用地에 關한 規模擴大等 希望戶數 및 面積
- 사. 農用地 利用增進事業의 實施에 關한 方針等의 作成現況
7. 農業近代化施設의 整備現狀
- 農業近代化施設 整備狀況圖
8. 就業機會의 現狀
- 가. 農業從事者의 他産業 就業現況
- 나. 農工法에 의한 農村地域 工業導入 實施計劃 및 테크노폴리스法에 의한 開發計劃의 概要

- 다. 農業從事者等에 대한 就業相談活動 現狀
- 라. 企業誘致 및 企業誘致活動 現狀
9. 農村生活環境의 現狀.....
- 가. 農村生活環境 整備事業등의 實施狀況.....
- 農村生活環境 整備狀況圖
- 나. 農村生活改善 共同活動의 現狀.....
- 다. 農村生活環境 整備의 問題點.....
10. 地域資源의 利用 및 管理·保全現狀.....
- 가. 地域資源의 賦存狀況
- 나. 地域資源의 利用 및 管理·保全의 現狀과 問題點
11. 森林의 整備, 其他林業振興과의 關聯에 관한 現狀
- 가. 林業의 概況
- 나. 農業振興과 林業振興과의 關聯에 관한 現狀과 問題點
- 다. 林業振興에 관한 諸計劃의 概要
12. 土地·水의 無秩序한 利用現狀
- 가. 農地등의 都市의轉換의 現狀과 問題點
- 나. 農業用 用排水의 水質汚濁現狀과 問題點
- 다. 湛水·溢水의 發生狀況과 問題點.....
13. 其他 方策.....
14. 地域의 諸問題의 解決을 위한 各種의 協定, 合意등의 實施狀況
- 가. 協定制度의 實施狀況
- 나. 交換分合.....
- (1) 實施狀況
- (2) 展 望
15. 農業 및 農村의 振興 및 整備를 위한 推進體制等.....
- 가. 推進體制圖.....
- 나. 市町村의 財政狀況
- 다. 其他 參考事項

빈 면

樣

式

市町村 整備計劃策定の 經緯

가. 策定經緯

나. 部落區域

部落番號	部落名	部落番號	部落名	部落番號	部落名

部落區域圖 別添

1. 地域의 概況

가. 立地條件

나. 人口 및 産業經濟의 動向 및 展望

(1) 總人口, 世帶數 및 産業別 就業人口의 動向 및 展望

單位: 人, 世帶, %

	總人口		總世帶數		産業別 就業人口				
					總就業人口	第1次	중農業	第2次	第3次
1980年	(100)	()	(100)	()	(100)	()	()	()	()
1985年	(100)	()	(100)	()	(100)	()	()	()	()
現在(年)	(100)	()	(100)	()	(100)	()	()	()	()
1990年展望	(100)	()	(100)	()	(100)	()	()	()	()
1995年展望	(100)	()	(100)	()	(100)	()	()	()	()

註: 1. 市町村 行政區域에 관한 數字이다.

2. 資料:

3. ()內는 構成比이다.

市町村의 策定體制, 部落에서의 立案方法等 農業·農村再編型計劃을 策定한 方法, 手續 및 經緯를 간결하게 기술한다.

- ① 市町村 整備計劃의 基礎單位가 되는 當該 農業振興地域內 部落의 구역구분원칙을 기술한다.
- ② 部落番號 및 部落名을 기입한다.
- ③ 部落區域, 部落番號 및 部落名을 表示한 部落區域圖를 作成, 添附한다.
그리고, 農業振興地域外의 일부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포함해도 좋다.

地域의 位置, 範圍, 自然條件(氣象, 地形, 土壤, 水利等), 交通, 運輸條件, 市場條件 등에 대하여 간결하게 기술한다.

- ① 地域의 人口, 世帶數, 產業別 就業人口, 生産額等の 推移를 기술하고, 지역경제의 特色 및 農業이 점하는 位置를 기술한다.
- ② 1980년 및 1985년 欄의 「중農家人口」欄 및 「중農家」欄에 대해서는 農業센서스(農業人口는 農家世帶員數로 한다), 그 以外의 欄에 대해서는 國勢調査에 의해 기입한다. 現在 欄은 市町村 統計에 의해 기입한다.
- ③ 1990년 및 1995년의 展望欄은 地方自治法 第2條 第5項의 當該 市町村의 건설에 관한 基本構想(同基本計劃 및 實施計劃), 都道府県 將來推計人口等 外에 市町村이 獨自的으로 작성한 計劃等에 의해 기입한다.
- ④ 註의 「資料」에 의해 數字의 出典, 推計方法等を 분명히 한다(以下 註의 「資料」에 대하여 같다).

樣

式

(2) 産業別 生産額의 動向 및 展望

單位：百萬元，%

	産 業 別 生 産 額				
	總 生 産 額	第 1 次	중 農 業	第 2 次	第 3 次
1980 年	(100)	()	()	()	()
1985 年	(100)	()	()	()	()
現在(年)	(100)	()	()	()	()
1990 年 展望	(100)	()	()	()	()
1995 年 展望	(100)	()	()	()	()

註：1. 資料：

2. 産業別 生産額의 ()內는 構成比이다.

다. 地域의 開發構想

라. 農業關係法令에 근거한 各種 農業振興計劃의 概要

計劃等名	地域指定，計劃策定等年度	指定地域等の 範圍	內 容

마. 農業關係以外的 法令에 근거한 地域等の 指定狀況

地 域 等 의 名 稱	指 定 等 年 月 日	根 據 法 令

2. 土地利用의 動向等

가. 土地利用의 動向

(1) 農業振興地域의 土地利用 動向

- ① 1980 년, 1984 년 및 現在 欄은 市町村 統計等에 의해 기입한다.
 ② 1990 년 및 1995 년의 전망 란은 (1)의 記載要領의 ③에 따라 기입한다.

地域의 都市化 및 工業化의 動向, 道路等の 建設, 産業振興, 遊園地 開發 其他 地域開發 等に 관한 國家, 地方公共團體, 事業者等の 計劃 또는 構想概要를 간결하게 기술한다.

- ① 地域에 關係하는 酪農·肉用牛生産 近代化計劃, 果樹農業振興計劃 其他法令에 근거한 各種 農業振興計劃 및 地域指定에 대하여 기입한다.
 ② 「內容」欄에는 計劃別로 그 概要를 간결하게 기술한다.

當該 市町村의 土地利用 또는 地域의 農業以外の 産業振興, 地域開發에 관한 地域等の 指定중 法令에 근거한 것에 대하여 기입한다.

- ① 國土利用計劃(市町村計劃)이 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에 의한 市町村 行政區域의 土地利用의 動向을,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에 준하여 작성한 市町村 行政區域의 土地利用의 動向을 基礎로 하여 當該 地域의 土地利用의 動向을 작성, 기입한다.

樣

式

單位：ha, %

	總面積	農 用 地			農業用 施設用 地	森 林		住宅地	工 場 用 地	其 他
		農 地	採草放 牧 地	計		原 野	混 牧 林 地			
1980 年	(100)	()	()	()	()	()	()	()	()	()
1985 年	(100)	()	()	()	()	()	()	()	()	()
現在(年)	(100)	()	()	()	()	()	()	()	()	()

註：1. ()內는 構成比이다.

2. 資料：

(2) 農地開發 可能地 面積

單位：ha

區 分	傾 斜	8° 未 滿	8° ~ 15° 未滿	15° ~ 30°
市 町 村 行 政 區 域				
農 業 振 興 地 域				
農 用 地 區 域				
其 他				

註：1. 市町村 行政區域 및 其他에는 市街化區域 및 用途地域(都市計劃法の 市街化區域 및 未線引 都市計劃區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되는 農地의 開發可能地는 포함하지 않는다.

2. 農地開發 可能地分級 調查結果에 時點의 修正을 가한 것이다.

3. 農用地區域(案)은 認可를 받을려고 하는 整備計劃에 의한 農用地區域이다 (이하 같다).

② 混牧林地 및 農業用 施設用地以外の 利用區分の 定義는 國土利用計劃(市町村計劃)에 의하지만 混牧林地 및 農業用 施設用地에 대해서는 44 年 運用通達의 記의 第3의 1의 (3) 및 「農業振興地域 整備에 관한 法律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의 施行에 대하여」(1975 年 7 月 15 日 50 構改 B 第 1461 號 農林事務次官依命通達. 이하 「50 年 施行通達」이라 한다)의 記의 第1의 2에 의한다.

① 「農地開發可能地分級 調査實施要領에 대하여」(1971 年 6 月 24 日 51 構改 C 第 216 號 構造改善局長 通達)에 근거한 農地開發可能地分級調査(이하 「分級調査」이라 한다)에 의해 가입하지만 分級調査는 1970 年 3 月 31 日 時點이기 때문에 그 後の 農業振興地域 區域 및 農用地區域의 變更, 農用地開發의 實績을 고려하여 所要의 수정을 가한 후 가입한다.

② 修正時에는 分級調査가 「土地利用基盤整備基本調査實施要綱에 대하여」(1975 年 4 月 3 日 50 構改 C 第 134 號 農林事務次官依命通達)에 근거한 土地利用基盤整備基本調査(이하 「50 年 基本調査」이라 한다)를 基礎하고 있으므로 1975 年 基本調査의 結果도 參考로 한다.

樣

式

(3) 森林의 混牧林地로서의 利用可能性

單位：ha

	現況混牧林地面積 (年)	左以外 森林의 混牧林地로서의 利用可能性
市町村行政區域		
農業振興地域 (農用地區域(案))		
其 他		

註：市町村 行政區域 및 其他에는 市街化區域 및 用途地域에 포함되는 混牧林地 및 混牧林地로서의 利用可能地는 포함되지 않는다.

(4) 農振白地地域의 分類

別 添：農振白地地域分類圖와 같다.

나. 部落의 土地利用現況等

(1) 農業部落의 狀況

單位：人，戶，ha，%

部 落 名	部 落 番 號	部 落 形 態				總 人 口	世 帶 數			現 況 宅 地 面 積 (A)	過去 3 個年の 宅地增加面積				比 率 $\frac{B}{A-B}$	備 考
		散 在	散 居	集 居	密 居		總 世 帶 數	農 家 數	農 家 率		計 (B)	農↓ 宅地	森↓ 宅林地	其↓ 宅他地		
計																
市町村 全 體																

- ① 「左以外 森林의 混牧林地로서의 利用可能性」欄은 現在 混牧林地로서 이용되지 않는 삼림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 토지이용상의 제약등을 고려하여 混牧林地로서 이용가능한 삼림의 위치, 면적, 이용방법등을 대략적으로 기술한다.
- ② 「市町村 行政區域」및 「其他」에는 市街化區域, 用途地域에 포함되는 混牧林地 및 混牧林地로서의 利用可能地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① 農業振興地域중 農用地區域(案) 以外の 區域(農振白地地域)으로서 部落, 河川, 農地를 제외한 것을 農用地 開發可能地, 混牧林利用可能地, 防災, 水源含養, 農村生活環境等으로 분류하여 農振白地地域分類圖에 表示한다.
- ② 農用地開發可能地에 대해서는 分級調査 및 基本調査의 結果를 防災, 水源含養에 대해서는 地域森林計劃書에 의한다.
- ③ 重複하는 것은 상관없다.

- ① 「部落形態」欄은 該當하는 것에 ○표를 한다.

또, 각각의 形態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ㄱ. 散在部落(山間)

주로 山間의 農業部落에서 보이는 形態로서 집이 몇군데의 계곡에 나누어져 있고, 집과 집이 여기저기 分布하고 있는 狀態의 農業部落

ㄴ. 散居部落(平野)

주로 平野의 農業部落에서 보이는 形態로서 집과 집사이에 논과 밭이 놓여있는 狀態의 農業部落

ㄷ. 集居部落

平野, 山間을 불문하고 집이 一定區域에 집단하여 數地가 인접하고 居住地區와 耕地가 分離되어 있는 狀態의 農業部落

樣

式

(2) 部落土地利用構想 樹立方針

(3) 部落土地利用構想

＜部落土地利用構想을 樹立할 部落名 및 部落番號＞

＜豫定 公共施設等＞

部 落 番 號	施 設 名	規 模 및 內 容

(4) 部落土地利用構想의 擔保措置

部落土地利用現況圖 別添

部落土地利用構想圖 別添

3. 農業・農村再編構想

가. 轉作 重點作目

重 點 作 目	現 狀 (年 度)		目 標 (年 度)	
	畜 作	轉 作 等	畜 作	轉 作 等

2. 密居部落

주로 市街化地區에 보이는 農業部落의 形態로서 農家와 農家사이에 非農家가 混在하여 집과 집이 密集하고 市街地에 連續해 있는 狀態의 農業部落

② 「總人口」 및 「世帶數」欄은 部落카드(要領 3 의 (나)의 (2)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記入한다.

③ 「現況宅地面積」欄은 固定資産臺帳, 5,000 분의 1 의 圖面에 의한 圖測等에 의해 파악하여 기입한다.

④ 「過去 3 年의 宅地增加面積」欄은 農業委員會等의 資料에 의해 파악하여 기입한다.

지리적조건, 사회적조건, 지역개발계획, 농촌생활환경시설의 설치계획, 택지화등 농업부락의 동향을 근거로 部落土地利用構想을 수립할 部落의 選定方針 및 部落土地利用構想을 수립할 部落이 포함되는 대략적인 범위(大字, 字)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部落土地利用構想을 樹立할 部落名 및 部落番號를 列記하고, 部落土地利用現況 및 部落土地利用構想을 圖面에 표시한다.

② 表 <豫定 公共施設>에는 今後 5 年間に 確實히 豫상되는 公共시설, 公場등에 대하여 기입한다.

部落土地利用構想의 實效性的 擔保措置(協定, 合議等)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水田農業確立對策實施要綱(1987 年 5 月 20 日 62 農蠶 第 1820 號 農林水產事務次官依命通達) 第 4 의 2 의 市町村 畚農業確立計劃과의 整合性에 配慮하여야 한다.

② 「畚作」欄은 轉作, 畚裏作을 포함하여 畚에서의 延 作付面積을 기입한다.

樣

式

나. 規模擴大 方向 및 作付地의 團地化等 合理的인 土地利用等の 推進方向

다. 轉作推進을 위한 條件整備

(1) 農業生産基盤

(2) 農業近代化施設

4. 農業生産의 現狀과 今後 方向

가. 重點作目の 概要

畚의 流動化 動向 및 現狀의 土地利用等を 근거로 規模擴大, 生産組織化等を 통한 生産單位의 추진방향, 轉作作物을 조합한 作付地의 團地化, 지역별 田畚轉換等 合理的인 土地利用方式에 대하여 간결하게 기록한다.

- ① 農業・農村再編構想到에 입각하여 當該地域의 農業生産의 再編成을 도모하기 위한 重点作目を 지정하고 그 생산 동향과 목표에 대하여 기록한다.
- ② 食品生産과 관련한 加工原材粉의 農産物을 生産하는 地域에서는 별도로 당해 작목에 관제되는 농업생산의 동향과 목표에 대하여 기록한다.

樣

式

나. 農業生産의 現狀과 目標

作 目	1980 年			1985 年			현 재 (年)			1989 年			1992 年			1995 年		
	飼養頭數作付面積	生産量	粗生産額	飼養頭數作付面積	生産量	粗生産額	飼養頭數作付面積	生産量	粗生産額	飼養頭數作付面積	生産量	粗生産額	飼養頭數作付面積	生産量	粗生産額	飼養頭數作付面積	生産量	粗生産額
米	ha	t							100									
麥 類	"								100									
()	"								100									
雜 穀 豆 類	"								100									
()	"								100									
()	"								100									
薯 類	"								100									
()	"								100									
施設 野 菜	"								100									
()	"								100									
()	"								100									
露 地 野 菜	ha								100									
()	"								100									
果 樹	"								100									
()	"								100									
施設 花 卉	a	本							100									
()	"	"							100									
露 地 花 卉	ha	"							100									
()	"	"							100									
工 藝 作 物	"								100									
()	"								100									
飼 料 作 物	"								100									
()	"								100									
其 他 耕 作 物	"								100									
()	"								100									
養 蠶 (桑)	< >		< >			< >			100	< >		< >			< >			
肉 牛									100									
乳 牛									100									
豚									100									
닭 採 卵 用									100									
닭 肉 用																		
其 他 畜 産 物									100									
()									100									
其 他									100									
總 計	-								-									

註: 1. 作目欄의 () 내는 重点作目이다.

2. 養蠶(桑)欄의 < > 내는 掃立卵量이다.

3. 資料:

記	載	要	領
① 가에서의 重点作目を 포함하여 主要作目に 대하여 기입한다. ② 가에서의 重点作目に 대해서는 作目名에 ()를 붙인다. 또 重点作目に 大豆, 사탕무우 등 구체적인 종류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는 각각 잡곡두류, 기타 경작종작물등의 「作目」欄에 (大豆), (사탕무우) 등으로 기입하여 생산작목을 세운다. ③ 화훼에는 園藝樹木을 포함한다. ④ 飼料作物에 대해서는 販賣하는 경우에만 그 粗生産額을 기입한다. ⑤ 養蠶(桑)의 「作目面積」欄에는 桑田面積 및 掃立卵量, 「生産量」欄에는 取繭量을 기입한다. ⑥ 肉牛의 粗生産額에는 仔牛, 育成牛, 肉牛, 廢牛의 販賣額을 포함한다. ⑦ 乳牛의 生産量은 生乳의 生産量으로 하고, 粗生産額에는 生牛, 仔牛, 育成牛, 廢牛의 販賣額을 포함한다. ⑧ 豚의 粗生産額에는 仔豚, 肉牛의 販賣額을 포함한다. ⑨ 「其他」欄에는 耕種, 畜産以外の 것을 기입한다. ⑩ 生産農業所得統計, 作物統計等に 의해 記入한다. ⑪ 시설야채, 시설화훼의 작부면적은 a로 표시한다. ⑫ 市町村畜農業確立計劃과의 調整을 도모하여야 한다.			

樣

式

다. 集出荷販賣計劃

(1) 農産物の 出荷量 및 出荷率의 動向

單位: t, %

作 目	1980 年			1985 年			현 재 (年)		
	生産量 (A)	出荷量 (B)	出荷率 (B/A)	生産量	出荷量	出荷率	生産量	出荷量	出荷率

註: 資料 :

(2) 集出荷販賣의 現狀 및 改善目標

라. 農業生産技術의 改善目標

- ① 「作目」欄은 나와 일치 시킨다.
- ② 出荷量은 市町村統計等에 의해 기록한다.
- ③ 出荷率 = (出荷量 / 生産量) × 100 으로 한다.

가의 重点作目を 포함하여 지역의 주요한 작목에 대하여 集出荷販賣의 現狀, 問題点 및 改善点を 전반적으로 기록하고, 그 중에 集出荷販賣의 改善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轉作의 정착화를 위해 改善点を 포함한 改善目標을 作目別로 集出荷, 貯藏, 出荷時期, 共販率等에 대하여 기록한다.

또 당해지역의 區域의 全部 또는 一部를 그 지역의 全部 또는 一部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이 農業協同組合等 經營指導等 事業實施 要領(1985년 9월 6일 60農經A 第887號 農林水產事務次官依命通達. 이하 「經部指導等 事業通達」이라 한다.)의 第3의 4에 근거한 지역농업재편공동생활동추진사업을 실시하는 농업협동조합이 인 경우에는 당해사업에서 책정되는 生産·販賣計劃을 참고로 하여야 한다.

가의 重点作目に 대하여 당해지역의 土地條件(整備後の 條件)에 따라 適用할 수 있는 範圍에서의 기계화를 취지로 하여 작부체계, 재배(사양)기술, 작업체계등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개선에 대한 원칙 및 목표를 기록한다.

樣

式

5. 農業生産基盤의 現狀

가. 農業의 整備率

單位 : %

	현 재 (년)	目 標
畓		
田		
樹 園 地		

註 : 1. 市町村行政區域內의 數字이다.

2. 畓의 整備率은 30 a 程度로 整備된 畓의 比率이다.

3. 田, 樹園地의 整備率은 農道가 幹線, 支線 모두 完備된 것의 比率이다.

나. 畓의 排水現況

單位 : ha

區 分	畓 排 水 現 況			市 町 村 水田面積	農業振興 地域內 水田面積	農用地區 內 水田面積
	4時間排除	日 排 除	排水不良			
計						

註 : 4時間排除 ……… 出水時에 湛水가 4시간이상 계속되는 면적이 10% 未滿
인것.

日 排 除 ……… 出水時에 湛水가 1일이상 계속되는 면적이 10% 미만인
것.

不 良 ……… 出水時에 湛水가 1일이상 계속되는 면적이 10% 이상인
것.

다. 農業生産基盤의 整備開發關係 各種 事業의 實施狀況

事業種目	受益面積	事業費	主要工事의 名稱 및 事業 量	事業主體	事業의 着工完了 (豫 定) 年 度	對圖番號
	ha	千円				

① 「現在」欄은 「第2次土地利用基盤整備基本調査實施要領의 制定에 대하여」(1983년 4월 8일 58構改C第259號 構造改善局長 通達)에 근거 土地利用基盤整備基本調査(이하「58年 基本調査」라 한다.)의 결과를 참고하고, 그후의 整備狀況에 造成 및 懷廢 상황을 근거로 기입한다.

② 「目標」欄은 整備計劃에서 계획된 사업을 달성한 경우의 정비수준을 기입한다.

① 「地區」欄은 農用地區域의 地區番號를 기입한다.

② 「水田의 排水現狀」欄은 農用地區域內的 畓중의 排水不良畓의 面積을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ㄱ. 「4時間排除」欄은 出水時에 湛水가 4시간이상 계속되는 면적이 10% 미만인 것을 기입한다.

ㄴ. 「日排除」欄은 出水時에 湛水가 1일이상 계속되는 면적이 10% 미만인 것의 면적을 기입한다.

ㄷ. 「不良」欄은 出水時에 湛水가 1일이상 계속되는 면적이 10% 이상인 것의 면적을 기입한다.

③ 58年 基本調査結査를 參考한다.

① 事業이 完了된 것 또는 現在事業實施中이거나 調査計劃中인 것을 記入하지만

(i) 국가, 縣營事業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ii) 국가, 縣營事業以外的 사업에 대해서는 圃場整備事業 혹은 農용지조성사업등의 面的인 사업으로서 주요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② 「對圖番號」欄은 사업에 일련번호(1, 2, 3 ………)를 기입한다.

③ 事業名, 受益範圍等を 표시한 농업생산기반정비상황도를 作成하여 첨부한다.

樣

式

農業生產基盤整備狀況圖

6. 農業經營의 規模擴大 및 農用地等の 農業上的 效率的 · 綜合的인 利用 現況

가. 農家戶數의 動向 및 展望

單位：戶

	總戶數	事 業 別 內 譯			經 營 耕 地 規 模 別 內 譯					
		專 業	第1種 兼 業	第2種 兼 業	0.5 ha 未 滿	0.5 ~ 1.0 ha	1.0 ~ 1.5 ha	1.5 ~ 2.0 ha	2.0 ~ 3.0 ha	3.0 ha 以上
1980 年 ()										
1985 年 ()										
現 在 (年)	()									
1990 年 ()										
1995 年 ()										

註：1. () 內는 中核的 農家數이다.

2. 資 料：

나. 中核的 農業의 營農類型 現況

營 農 類 型		現 況	
		平 均 經 營 規 模	戶 數(經營體數)
個人經營		ha	
	計		
協業經營			
	計		

원문누락

樣

式

다. 農用地等の流動化 現狀

(1) 權利移動의 動向

	賣 買		贈 與		賃 借 權 設 定		使用賃借權 設 定		其 他		合 計		農地價格 (自作地耕作目的)	標 準 小作料
	件數	面積	件數	面積	件數	面積	件數	面積	件數	面積	件數	面積		
年		ha		ha		ha		ha		ha		ha	千円 / 10a 中畝 中田	円
年													中畝 中田	
年													中畝 中田	
計														

註：資料：

(2) 權利移動의 動向 - 農用地等の流動化諸方策別

	農地移動適正化斡旋事業				農地利用増進事業			
	賣 買		賃 借		所有權移轉		利用權設定	
	件數	面積	件數	面積	件數	面積	件數	面積
年								
年								
年								
計								

① 최근 3개년에 대하여 「農地移動實態調査」結果, 「利用權設定等實態把握調査」結果, 「畚・田賣買價格等に 관한 調査」結果等に 의해 記入한다.

② 각각의 權利移動에 대하여는 農地法 및 農用地利用増進法에 의한 것의 合計値를 記入한다.

① 최근 3개년에 대해서 農業委員會 資料等に 의해 記入한다.

② 2이상의 方策에 重複하는 것에 대해서는 該當하는 方策의 각각에 記入한다.

③ 「其他」欄에는 農業者年金基金에 의한 買入, 賣渡, 融資事業等に 의한 것을 記入하고 註에 이중 主要한 것은 기술한다.

樣

式

(單位: ha)

農地保有合理化促進事業				其 他	
賣 買		貸 借			
件 數	面 積	件 數	面 積	件 數	面 積

註: 其他欄의 주된 方策은 ○○○, ○○○이다.

라. 農作業 受委託 및 共同化, 地力의 維持增進, 耕地利用率, 裏作導入等의 現狀

	農作業受委託	農作業共同化	耕地利用率	裏作導入	備 考
1980 年	戶 ha	戶 組織	%	ha	
1985 年					
현재 (年)					

마. 地域農業集團 및 農業生産組織等의 組織化 現狀

組 織 名	設 立 年 度	組 織 構 成 員 數	活 動 內 容	關 係 部 落 番 號
		()		
		()		
		()		
		()		

註: () 內는 中核的 農家數이다.

- ① 農作業 受委託은 關係農家戶數, 面積을 記入한다.
- ② 農作業 共同化는 組織數, 參加農家戶數를 記入한다.
- ③ 裏作導入은 作付面積, 주된 作目名을 記入한다.
- ④ 地方의 維持增進, 輪作, 遊休地, 荒作의 解消等에 대해서는 文章으로 記述한다.

- ① 「組織構成員數」欄에는 () 내에 中核的 農家數를 記入한다.
- ② 「活動內容 및 效果」欄은 當該農業生産組織의 活動이 個別 農業經營에 준 效果도 포함하여 簡潔하게 記述한다.
- ③ 「關係部落番號」欄은 主要關係部落(組織構成員의 약 8 割을 점하는 部落, 1 部落에서 8 割미만인 경우는 組織構成員의 合計가 약 8 割을 점하는 上位複數 部落)의 部落番號를 記入한다. 또 關係部落이 多數인 경우는 「1~10, 13~18」과 같이, 또 關係部落이 全部落에 이르는 경우는 「全部落」이라고 記載해도 상관없다.

樣

式

바. 農用地에 관한 規模擴大等 希望戶數 및 面積

單位：戶, ha

豫想期間	部落番號	規模擴大希望		規模縮小希望	
		戶數	面積	戶數	面積
3年未滿					
3年～5年					
5年以上					

註：1. 예상기간이란 部落카드 作成時에 예상기간이다.

2. 部落카드에 의한다.

사. 農用地利用增進事業의 實施에 관한 方針等의 作成狀況

(1) 實施方針의 承認年月日

(2) 農用地利用增進計劃의 公告年月日

7. 農業近代化施設의 整備現狀

	事業種·目	受益面積 ha	受益戶數 戶	事業費 千円	施設의 概要		事業主體	事業着工完了(豫定)年 度	對圖番號
					名稱	數·規模			
生産關係施設									
流通加工關係施設									

農業近代化施設整備狀況圖：別添

① 部落카드를 예상기간에 따라 정리하여 기입한다.

② 「部落番號」欄은 각각 예상기간에 該當하는 部落의 部落番號를 記入한다.

① 共同利用施設로서 국가 또는 縣의 補助事業에 의해 整備된 것을 記入한다.

② 生産關係施設과 流通加工關係施設의 區分은 다음에 의한다.

生産關係施設：畜舍，堆肥舍，蚕室，溫室，農機具收納施設等 農畜産物の 生産用に 사용되는 施設

流通加工關係施設：農産物集出荷施設，農産物調製施設，農産物貯藏施設等 集荷，調製，貯藏 또는 出荷用으로 사용되는 施設

③ 「對圖番號」欄은 事業에 一連番號(①，②，③……)를 記入한다.

④ 施設名，設置場所，受益範圍等を 表示한 農業近代化施設整備狀況圖를 作成하여 첨부한다.

樣

式

8. 就業機會의 現狀

가. 農業從事者의 他産業就業 現狀

單位：人

區 分		從 業 地								
I	II	市 町 村 內			市 町 村 外			合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恒 常 的 勤 務	○ ○ 業 △ △ 業									
計										
自 營 兼 業										
計										
出 家										
計										
日 雇 · 臨 時 雇										
計										
總 計										

나. 農工法에 根據한 農村地域工業導入實施計劃 및 테크노폴리스 法에 根據한
開發計劃의 概要

<○○計劃의 概要>

	地 區 名	企 業 數	工 場 用 地 面 積 (㎡)	出 荷 額 (百萬元)	雇 用 從 業 員 數 (A)	左 中 農 業 從 事 者 (B)	B / A (%)	主 要 業 種
計 劃 (○○年)	○○ 地 區							
	合 計							
實 績 (○○年)	○○ 地 區							
	合 計							

註：實績은 操業中인 것을 말한다.

- ① 앙케이트調査等に 의한 農業従事者の 農業以外の 産業으로의 就業現狀을 左表를 参照하여 명백히 한다.
- ② 區分欄의 I 은 形態別, II 는 産業別, 業種別이다.
- ③ 形態別이란, 恒常的勤務, 出家, 日雇, 臨時雇, 自營兼業等の 分類에 의한다.
또, 恒常的勤務, 出家, 日雇, 臨時雇, 自營兼業의 定義는 農業센서스에 의한다.
- ④ 産業別이란 日本標準産業分類의 大分類에 의한 것이다.
- ⑤ 業種別이란 日本標準産業分類의 中分類 또는 小分類에 의한 것이다.
- ⑥ 農業従事者란 農林業센서스의 定義에 의한다.

農村地域工業導入促進法(1971년 법률제 112호)에 의한 農村地域工業導入實施計劃書(이하 「實施計劃書」라 한다.) 및 高度技術工業集積地域開發促進法(1983년 법률제 35호)에 의한 開發計劃書(이하 「開發計劃書」라 한다.)가 作成되어 있는 市町村에 대하여는 同計劃書의 計劃 및 操業中인 것의 實績을 記入한다.

様

式

다. 農業従事者에 대한 就業相談活動 現狀

時 期	推 進 主 體	對 象 者 및 參 加 人 員	內 容

라. 企業誘致 및 企業誘致活動 現狀

時 期	推 進 者	對 象 企 業 名	內 容

① 過去 3 년간의 實績을 記入한다.

② 「對象者 및 參加人員」란은 상담활동별로 對象者 및 參加人數를 記入한다.

① 過去 3 년간의 實績을 記入한다.

② 「內容」란에는 企業에 대한 PR活動, 新聞廣告, 當町出身의 企業家에의 要請等에 대하여 具體的으로 記入한다.

樣

式

9. 農村生活環境의 現狀

가. 農村生活環境整備事業等の 實施狀況

事業 種目	關係部落 番 號	受益戶數 (人口)	事業費	主要工事 또는 主要施設名	事業 主體	事業의 着工完 了(豫定)年度	對圖 番 號
			千円				

나. 農村生活改善共同活動의 現狀

活動等名稱	實施主體	組織數 또는 構成員數	主要活動內容

다. 農村生活環境整備의 問題點

- (1) 安 全 性
- (2) 保 健 性
- (3) 便 利 性
- (4) 快 適 性
- (5) 文 化 性

- ① 農業振興地域을 受益의 對象으로 한 國家 또는 縣의 補助事業, 現在實施中 및 調査計劃中인 것도 포함, 記入한다.
- ② 「關係部落番號」欄은 主要關係部落(受益戶數의 약8割을 차지하는 部落, 1 部落에서 8割미만인 경우는 受益戶數의 合計가 약8割을 접하는 上位複數의 部落)의 部落番號를 記入한다.
또, 關係部落이 多數인 경우는 「1~10, 13~18」과 같이, 또 關係部落이 全部落에 미치는 경우는 「全部落」이라 記載해도 상관없다.
- ③ 「對圖番號」欄은 事業에 一連番號(①, ②, ③, ……)를 記入한다.
- ④ 施設名, 場所等を 表示한 農村生活環境整備狀況圖를 作成하여 첨부한다.

郷土文化, 스포츠, 保健, 生活改善等の 活動중 主要한 것에 대하여 記入한다.

農村生活環境의 現狀, 農村生活環境整備事業等の 實施狀況 및 農村生活改善共同活動의 現狀을 근거로 農村生活環境, 農村生活環境整備等に 의한 問題點을 下記의 ①~⑤로 나누어 記述한다.

- ① 安 全 性
防災, 防火, 交通安全, 防犯等に 대하여 정리한다.
- ② 保 健 性
쓰레기處理, 排水處理, 糞尿處理, 害虫驅除, 給水, 保健·醫療等に 대하여 정리한다.
- ③ 便 利 性

樣

式

(參考) 農村生活關係公共施設整備의 方向

施設의 種類	施設規模 및 內容	位 置	關係部落番號	部落土地利用數想과의 關係

10. 地域資源의 利用 및 管理・保全의 現狀

가. 地域資源의 賦存狀況

名 稱	位 置	賦 存 狀 況

나. 地域資源의 利用 및 管理・保全의 現狀과 問題點

11. 森林整備 및 其他 林業振興과의 關聯에 關한 現狀

가. 林業의 概要

나. 農業振興과 林業振興과의 關聯에 關한 現狀과 問題點

交通通信等에 대하여 정리한다.

④ 快 適 性

農村公園, 老人, 託兒等에 관련하는 公共施設의 利用等에 대하여 정리한다.

⑤ 文 化 性

스포츠活動, 教養娛樂, 郷土行事, 藝能保存等에 대하여 정리한다.

農村生活環境公共施設(학교, 병원등)로서 주요한 것에 대하여 정비 방향을 기입한다.

- ① 土地資源, 水資源, 景觀, 文化藝能等の 地域資源中 有效利用 및 적정한 管理・보전을 도모할 必要가 있는 것에 대하여 그 賦存狀況을 기술한다.
- ② 地域資源의 種類에 대해서는 要領第 5 의 6 의(1) 을 參照하여 地域에 부존하는 諸資源을 광범위하게 기술한다.
- ③ 「賦存狀況」欄은 부존량, 부존상태, 분포등에 대하여 記入한다.

가의 地域資源중 未利用, 低利用의 地域資源 및 適正한 管理・保全되고 있지 않는 地域資源에 대하여 그 現狀 및 問題點을 簡潔하게 記述한다.

當該地域에서의 林業의 位置, 森林面積, 樹種, 林齡構成等の 現況, 森林施業의 動向, 林道の 整備狀況, 임산물생산유통가공시설의 정비상황, 임업생산의 동향, 林家の 狀況, 삼림조합의 현황, 임업관련산업의 동향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所得, 就業, 土地利用 및 林産物의 農業資材・施設로서의 利用等の 면에서 農業의 振興과 林業振興의 관련에 대한 문제점을 기술한다.

樣

式

다. 林業振興에 관한 諸計劃의 概要

12. 土地・水の 無秩序한 利用의 現狀

가. 農地等の 都市的 轉換의 現狀과 問題點

單位：ha

用 途	住宅用地		工 鑛 業 地		學校用地		公 園・ 運動用地		道・水路 鐵道用地		植 林		其 他		計	
	件數	面積	件數	面積	件數	面積	件數	面積	件數	面積	件數	面積	件數	面積	件數	面積
年																
年																
年																

나. 農業用排水의 水質汚濁現況과 問題點

다. 湛水・溢水의 發生狀況과 問題點

單位：ha

	件 數	被 害 面 積
年		
年		
年		

13. 其 他 方 策

林業振興地域整備計劃, 森林整備計劃等이 策定되어 있는 경우는 그 概要를 記述한다.

- ① 農地等(混牧林地를 포함한다.)의 都市轉換의 현상과 문제점에 대하여 최근의 경향을 기술한다.
- ②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기입한다.

農業用排水의 水質汚濁의 現狀과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한다.

- ① 湛水·溢水の 發生狀況과 問題點에 대하여 최근의 경향을 기술한다.
- ② 과거 3년간에 대하여 기입한다.

當該地域에서 특히 意欲的으로 推進하고 있는 方策 또는 推進하고자 하는 方策이 있는 경우는 그 배경, 목적, 내용 및 실현수단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方策에 대하여 例示한다면 이하와 같다.

- ㄱ. 高度情報化社會의 進展에 對應한 農村情報시스템의 整備構想
- ㄴ. 都市住民을 위한 農業體驗의 촉진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구상
- ㄷ. 농업후계자의 育成을 위한 部落리더 육성구상 및 都市로부터의 新規參入者의 수용예상
- ㄹ. 高齡化社會에 대응한 농촌고령자의 생활구상
- ㅁ. 農業과 林業의 일체적인 진흥을 위한 예상
- ㅂ. 지역의 자연조건을 살리는 유원지 구상

樣

式

14. 地域의 諸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各種의 協定, 合意等의 實施狀況

가. 協定制度의 實施狀況

名 稱	地 區 名	締 結 時 期	有 效 時 間	參 加 者	內 容	備 考
		年 月	年	人		

나. 交 換 分 合

(1) 實 施 狀 況

地 區 名	實 施 時 期	事 業 主 體	對 象 面 積	參 加 者	備 考
	年 月		ha	人	

(2) 今 後 展 望

15. 農業 및 農村의 振興 및 整備를 위한 推進體制等

가. 推 進 體 制 圖

- ① 當該地域에서 締結되어 있는 協定, 合意等の 内容에 대하여 기입한다.
- ② 農業振興地域 整備에 關한 法律(이하「法」이라한다.)에 근거한 協定에 대해서는 備考欄에 그 취지를 분명히 한다.
- ③ 法에 의한 協定은 전부 記入하고, 法以外の 것은 過去 3 년가에 대하여 기입한다.

- ① 當該地域에서 實施된 交換分合의 概要에 대하여 記入한다.
- ② 法에 근거한 揚合과 土地改良法에 의한 경우를 備考欄에 그 취지를 분명히 한다.

農業 및 農村의 振興 및 整備를 위한 市町村, 農業團體, 部落을 포함한 推進體制를 圖示한다. 또, 市町村의 農業振興地域制度主務課를 ☐ 로 표시한다.

樣

式

나. 市町村의 財政狀況

單位：千円

	〇〇年	〇〇年	〇〇年	〇〇年	〇〇年
歲出會計(A)					
農業關係費(B)					
農業關係事業 市町村負擔金					
B / A %					
財政力指數					
實質收支比率%					
公債費比率%					
經常收支比率%					

다. 其他 參考事項

記

載

要

領

最近 5 年間に 걸쳐 記入한다.

빈 면

Ⅱ. 「土地利用再編型」農業振興地域整備計劃書

빈 면

様

式

〇〇農業振興地域整備計画書

(土地利用再編型計画書)

年 月

〇〇県〇〇郡(市) 〇〇町(村)

目 次

1. 地域의 振興方向	
가. 振興의 方向	
나. 計劃의 特色	
2. 農用地利用計劃	
가. 土地利用區分의 方向	
(1) 土地利用의 方向	
(가) 土地利用의 構想	
(나) 農用地區域의 設定方針	
(2) 農業上的 土地利用 方向	
(가) 農用地等 利用의 方針	
(나) 用途區分의 構想	
나. 農用地利用計劃	
3. 農業生産基盤의 整備開發計劃	
가. 土地基盤의 整備 및 開發의 方向	
나. 土地基盤整備開發計劃	
다. 森林의 整備 其他 林業振興과의 關聯	
라. 土地·水의 無秩序한 利用防止 關聯事項	
마. 他事業과의 關聯	
4. 農業經營의 規模擴大 및 農用地等の 農業上的 效率的·綜合的인 利用促進計劃	
가. 農業經營의 規模擴大 및 農用地等の 效率的·綜合的인 利用에 關한 誘導方向	
(1) 中核的 農家の 農業經營 目標	
(2) 農用地等の 農業上的 效率的·綜合的인 利用에 關한 誘導方向	
나. 農業經營의 規模擴大 및 農用地等の 效率的·綜合的인 利用促進을 위한 方策	
다. 森林整備 其他 林業振興과의 關聯	
라. 土地·水의 無秩序한 利用防止 關聯事項	

5. 農業近代化 施設의 整備計劃	
가. 農業近代化 施設의 整備方向	
나. 農業近代化 施設 整備計劃	
다. 森林整備 其他 林業振興과의 關聯	
라. 土地·水의 無秩序한 利用防止 關聯事項	
마. 他事業과의 關聯	
6. 農業從事者의 安定的인 就業 促進計劃	
가. 農業從事者의 安定的인 就業의 促進目標	
나. 農業從事者의 安定的인 就業의 促進을 위한 方策	
다. 森林整備 其他 林業振興과의 關聯	
라. 土地·水의 無秩序한 利用防止 關聯事項	
7. 生活環境施設의 整備計劃	
가. 生活環境施設의 整備目標	
나. 生活環境施設의 整備計劃	
다. 森林整備 其他 林業振興과의 關聯	
라. 土地·水의 無秩序한 利用防止 關聯事項	
마. 他事業과의 關聯	
8. 附 圖	別添
가. 土地利用計劃圖(附圖 1 號)	
나. 土地基盤整備開發計劃圖(附圖 2 號)	
다. 農業近代化施設 整備計劃圖(附圖 3 號)	
라. 農村生活環境 整備計劃圖(附圖 4 號)	
別 記 農用地利用計劃	
(1) 農用地區域	
가) 現況農用地等에 關係되는 農用地區域	
나) 現況森林, 原野等에 關係되는 農用地區域	
(2) 用途區分	

樣

式

1. 地域의 振興方向

가. 振興의 方向

나. 計劃의 特色

2. 農用地利用計劃

가. 土地利用区分의 方向

(1) 土地利用의 方向

(가) 土地利用의 構想

單位 : ha, %

區分 年次	農 用 地		農業用施設 用 地		森 林 · 野 原		住 宅 地		工場用地		其 他		計	
	實數	比率	實數	比率	實數	比率	實數	比率	實數	比率	實數	比率	實數	比率
現 在 (○○年)					()	()								100.0
目 標					()	()								100.0
增 減														

註 : () 내는 混牧林地 面積이다.

(나) 農用地區域의 設定方針

ㄱ. 現況農用地에 대한 農用地區域의 設定方針

- ① 農業振興地域에서 농업생산, 농업경영, 토지이용,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농용지의 유통화, 농업근대화시설의 정비, 취업기회의 확보·확대, 생활환경의 정비, 지역자원의 이용등에 대한 構想을 기술함으로써 當該地域에서 綜合的인 정비방향의 기본적인 원칙을 기술한다.
- ② 농업생산에 대해서는 基礎資料 3의 가에 의해 地域의 중점작목의 작부면적(사료頭羽數), 단위당 수량, 생산량등의 목표를 기술한다.

특히 중점적으로 취급하려는 사항, 그 내용 및 計劃策定手法等の 특색을 기술한다.

- ① 地域의 위치(範圍), 자연적조건, 토지이용의 현황등 그 지역의 概況을 간소하게 하고, 아울러 그 지역의 인구 및 산업의 장래전망, 건설, 산업진흥, 지역개발계획등을 감안한 장래의 他用途土地利用의 향상 및 지역농업의 근대화, 지역농업생산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農用地 및 農業用施設用地의 확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총괄적으로 기술한다. 더우기 이러한 방향에 근거한 주요한 用途間(農用地, 農業用施設用地, 森林·原野, 住宅地, 工場用地等)의 이동구상에 대하여 각각 대략적인 移動量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 ② 基礎資料 2의 가의 기재요령에 준하여 기입한다.
- ③ 「森林·原野」欄의 ()내에는 混木林地面積을記入한다.

地域內에 있는 現況農用地에 대해 農用地區域을 設定할 때에 기본적인 원칙 및 그 범위에 대하여 記載例를 참고로 하여 기술한다.

(記載例)

7. 現況農用地에 대한 農用地區域의 設定方針

本地域內에 있는 現況農用地 ○○○ha중 대개 다음과 같은 農用地以外的 農用地

様

式

ㄴ. 現況農業用施設用地에 대한 農用地區域의 設定方針

記 載 要 領

約 〇〇〇ha

a. 다음의 地域, 地區 및 施設等의 整備에 관계되는 用地

地域, 地區 및 施設等의 具體의인 名稱 또는 計劃名	位 置 (部落名等)	面 積			備 考
		農 用 地	森林其他	計	

(註) 위표에 記載하는 地域, 地區 및 施設計劃의 범위는 1969 年 施行通達의 記의 第4의 ②의 (1)에 관계되는 것중 b의 部落居住區域에 포함되지 않은것의 범위로 한다.

또 同通達 (1)에 대해서는 市町村等이 基礎調査等의 結果, 地域, 地區의 설정취치와 兩立하는 농업을 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것에 대해 기입한다.

b. 部落土地利用 構想의 部落居住區域內의 農用地 約〇〇ha

c. 자연적인 조건등으로 보아 農業의 近代化를 도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農用地.

(a) 傾斜度 1/〇〇以上의 農用地 約〇〇ha

(b) 都市公害(都市排水等에 의한 汚染)이 격심하여 금후 농업용지로서의 존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農業用地 約〇〇ha

d. 其 他

(a) 中心部落의 整備(中小企業의 誘致, 住宅의 建設等)에 따라 擴張對象이 되는 〇〇部落 周邊農用地 約〇〇ha, 〇〇部落 周邊農用地 約〇〇ha

(b) 道路沿線 市街地로서 開發이 進行되고 있는 國道 〇〇線의 〇〇지점에서 〇〇지점 間, 県道 〇〇線의 〇〇지점에서 〇〇지점간의 沿線農用地 約〇〇ha

(註) 「其他」項의 기재시에는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用地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農地 轉用이 進行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土地利用構想」에서 분명한 他用途用 地로의 需要의 대응을 충분히 배려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地域內에 있는 現況 農業用施設用地에 대하여 農用地區域을 설정할 때의 기본적인 원칙 및 대략적인 그 범위에 대하여 記載例를 참고로 하여 기술한다.

(記載例)

ㄴ. 現況 農業用施設用地에 대한 農用地區域의 設定方針

本 地域內에 있는 現況 農業用施設用地중 ㄱ에서 農用地區域을 설정할 방침으로한 農 用地에 介在하거나 인정하는 것으로서 當該農用地와 일체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것

樣

式

ㄷ. 現況森林, 原野等에 대한 農用地區域의 設定方針

土地의 種類	所在(位置)	所有權者 또는 管理者	面 積 ha	利用 豫 定 途 用	備 考
計					

(2) 農用上의 土地利用 方向

(ㄱ) 農用地等 利用方針

記 載 要 領

및 대개 다음의 農業用施設用地에 대하여, 農用地區域을 설정할 방침이다.

農業用施設の 名稱	位 置(部落名)	面 積	農業用施設の 種類
		ha	
計			

(註)위표에 기재하는 농업용시설용지는 집단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農業用施設用地로서 그 團地規模가 약 2ha 이상인 것으로 한다.

地域農業의 近代化, 農業經營規模의 擴大를 위한 必要性等, 現況森林 原野等에 대하여 農用地區域을 설정할 구체적인 이유 및 대략적인 위치, 규모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소하게 기술하고, 또 주된 구역별로 분명하도록 기술한다.

또 現在事業實施中 또는 調査計劃中인 地區以外的 森林, 原野等에 대하여 農用地區域을 설정할 때에는 그 개발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한다.

이 項에서는 일반적인 山林, 原野뿐만아니라 1969년 施行通達의 記의 第4의 2의 (1)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地域, 地區等으로서 現在 農用地等으로는 利用되고 있지않지만 今後 그 地域, 地區等の 設定趣旨와 兩立할수 있는 農業을 행하기 위하여 農用地區域을 설정하고자 할때는 그 地域等에 대해서도 함께 기술하여야 한다.

① 「土地의 種類」欄은 「林地」「原野」等과 같이 기재하고 특히 地域, 地區에 관련있는 土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② 「所在」欄은 地區・區域番號(別記 農用地利用計劃의 (1)의 가에서 정하는 番號. 이하 같다.)를 기입한다. 또 필요에 따라 地番 또는 林班番號를 기입한다.

③ 「所有權者 또는 管理者」欄은 「國有地」「公有地」「私有地」等과같이 기입한다.

④ 林地의 경우는 備考欄에 「人工林」「天然林」等과같이 林地의 種類를 記入하고, 「人工林」의 경우는 植林된 年次 및 伐期를 付記한다.

① 農用地區域을 설정하려는 農用地等에 대한 이용상황 및 농업생산목표등과의 關聯을 포함한 장래에 있어서 地域全體의 農用地等の 이용방침을 간소하게 기술하고, 필요하면 地域內를 小區分하여 그 區域(예를들면 市町村 程度를 單位로 하는 區分. 이하 「地區」라 한다.)별로 기술한다.

또 混木林利用의 증대가 예상될 때는 混木林地로서의 이용의 필요성등에 대하여 付記한다.

樣

式

(單位：ha)

區分 地區名	農 地			採草放牧地			混牧林地			農業用地施設 用			計			森林・ 原野等
	現況	將來	増減	現況	將來	増減	現況	將來	増減	現況	將來	増減	現況	將來	増減	現 況
計																

(ハ)用途區分の構想

(一)〇〇地區

(二)〇〇地區

- ② 表중의「森林·原野等」欄은 現況森林, 原野, 雜種地等の 면적을 기입하고, 1969 년 施行通達의 記의 第 4 의 2 의 (1)의 地域, 地區에 포함되는 現況 森林, 原野, 雜種地等 으로서 農用地區域에 포함되는 것의 면적 괄호로 付記한다.
- ③ 計의 「現況」欄과 森林·原野等の 「現況」欄의 合計는 計의 「將來」欄에 一致한다.

地區內에서 農用地區域을 설정하려는 農용지등을 水系, 地形等에 따르고, 필요하면 도로, 철도, 하천등의 一定 地物, 施設, 工作物로부터 距離 및 方向을 사용함으로써, 農用地群 또는 農業用施設用地群으로서, 대략적인 位置 및 規模를 표시하고, 그 農用地群 또는 農業用施設用地群別로 現況用途의 分布土地基盤整備狀況 및 農用地 또는 農業用施設用地의 條件等の 狀況과 將來用地的 構想을 簡潔하게 기술한다.

(7)에 준하여 기술한다.

(記載例)

○○地區

- a. ○○水系에 속하는 平坦郡의 農用地 약○○ha에 대해서는 汎用田으로서 이미 用排水 條件의 整備가 상당히 進行되어 있고, 그 대부분이 團地性 ○○ha이상 傾斜度 1/○○ 미만으로 구성되어 今後 畚田輪換에 對應하는 條件을 갖추고 있으므로 農地로서의 이용을 권장한다.
- b. ○○用支流域에 속하는 縣道○○線의 西部緩傾斜地帶의 약 ○○ha의 農用地는 그 $\frac{1}{3}$ 이 畚으로 $\frac{2}{3}$ 가 田으로 이용되며, 畚에 대해서는 小規模로 分散되어 있고 傾斜度도 1/○○이상이며, 機械化의 條件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畚에서 田으로 轉換을 추진하여 野菜生産의 主產地化計劃의 기반으로서 農地이용을 촉진한다.
- c. ○○台地에 展開하는 農用地 약 ○○ha는 總體的으로는 田이지만 樹園地, 草地와의 混在가 다소 보여져 농업생산의 합리화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樹園地중 果樹에 대해서는 既存果樹園地密度가 높은 町道 ○○線의 左側 丘陵部에 집단화를 추진하고, 桑園에 대해서는 右側의 丘陵部에 집단화한다. 또 草地에 대해서는 大型機械化를 전제로 하여 ○○山麓南面緩傾斜地帶에 집단화하고 이와 함께 인접하여 존재하는 林地 약 ○○ha를 개발하여 大規模草地를 조성하는등, 農지의 집단화를 基軸으로 토지이용의 再編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운용한다.

樣

式

나. 農用地利用計劃

別記와 같다.

3. 農業生産基盤의 整備開發計劃

가. 土地基盤의 整備및 開發의 方向

(가) ○○地區

(나) ○○地區

나. 土地基盤整備開發計劃

事業의 種類	事業의 概要	受 益 的 範 圍		對象番號	備 考
		受益地域	受益面積		
			ha		

d. ○○部落의 주변에 展開하는 農用地等に 약 ○○ha는 田과 畜舎와의 利用이 混在하여 田의 농업생산의 합리화를 害하고, 또 養豚經營이 農村部落에 畜産公害를 끼치고 있으므로 양축경영을 위한 畜舎는 입접하는 ○○산록의 北面緩傾斜地帶에 집단화하고, 또 ○○部落周邊은 大型機械化가 가능하도록 田으로 집단화를 도모하여 養豚經營에서 발생하는 糞尿를 田에 還元하여 전작경영과 양돈경영의 有機的結合을 도모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추진한다.

地域內에 있는 농용지중 農用地區域에 포함되는 기존농용지의 用途別土地條件 및 條件別面積(團地性, 傾斜度等), 토지기반정비의 상황(총농용지구역내의 농용지면적중 정비완료면적등) 에 대하여 간결하게 기술하여, 農用地利用計劃에 따라 農産物 需要의 동향에 적용할 수 있는 農業生産構造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후 추진해야 할 기존農用地의 整備, 未墾地의 開發 및 農用地의 保全에 대한 方向을 要整備, 開發面積을 포함하여 지역전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결하게 기술하며 다음과 같이 지구별로 토지기반의 정비, 개발의 구상을 기술한다.

地區內의 農用地區域으로 計劃하려는 토지기반의 정비, 개발에 대하여 그 목적, 基幹的인 사업의 종류 및 사업의 개요를 내용으로한 총괄적인 구상을 간결하게 기술한다.

또 地區의 範圍가 廣域인 이유로 構想의 明確化를 기하기 어려운 경우는 地區內를 水系, 地形等에 따라 區分하고, 그 區域별로 구상을 기술한다.

7에 준하여 기술한다.

- ① 「事業의 種類」欄은 「農業振興地域 整備에 관한 法律의 運用에 대하여」(1969년 10월 1일 44農政第5001號農政局長通達 以下「1969년運用通達」이라한다.)의 記의第3의1의(4)에 따라 기입한다.
- ② 「事業의 概要」欄에는 「用水改良」의 경우는 「用水路의 新設改修, 田灌施設整備」와 같이, 「農用地造成」의 경우는 「農道網의 정비를 위한 改修, 新設, 鋪裝」과 같이, 「農用地造成」의 경우는 「樹園地造成, 草地造成」과 같이 각각의 事業種類별로 主要工事의 내용을 기입한다.
- ③ 「受益地區」欄에는 수익농용지區域의 地區・區域番號를 기입한다. 또 受益이 2以上의 地區에 걸치는 경우는 地區・區域番號를 列記한다.

다. 森林整備 其他 林業振興과의 關聯

라. 土地, 水의 無秩序한 利用 防止 關聯事項

마. 他事業과의 關聯

4. 農業經營의 規模 擴大 및 農用地等の 農業上の 效率的·綜合的인 利用의 促進計劃

가. 農業經營의 規模擴大 및 農用地等の 效率的·綜合的인 利用에 관한 誘導方向

(1) 中核的農家の 農業經營 目標

(가) ○○地區

(나) ○○地區

	營農類型	目標規模	作目構成	戶數 (經營體數)	關係 部落番號	流動化目標 面積
個人經營						ha
協業經營						

註：中核的農家 또는 中核的農家が 參加하고 있는 協業經營의 現況 및 目標이다.

- ④ 「對圖番號」欄은 일련번호(1, 2, 3 ……)를 기입한다.
- ⑤ 備考欄에는 구체적인 補助・融資事業의 도입에 대하여 지역관계자에게 의향을 묻는 경우는 補助事業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事業名, 融資事業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農林漁業金融公庫資金, 農業近代化資金등 그 資金名을 밝힌다.

農業振興地域整備基本方針에서 정하고 있는 廣域的인 地域에서 정하는 것이 적당한 토지기반의 정비, 개발에 관한 구상 및 현재 실시중 또는 실시계획인 廣域的인 土地基盤整備事業 및 治水, 發電, 上水道, 一般道路等の 사업과의 관계에 대하여 기술한다.

- ① 中核的農家(농업에 대한 강한 의욕과 높은 경영능력을 가진 농가 이하 같다)의 농업 경영 목표 및 그 육성방향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기술한다.
- ② 食品産業과 관련한 加工原材料의 農産物을 生産하는 地域에 있어서는 별도로 當該作物 生産農家の 농업경영 목표 및 육성방향에 대하여 간결하게 기술한다.
- ③ 필요에 따라 지구 별로 기술한다.
- ④ 中核的農家の 農業經營目標에 대하여 記載한다.
- ⑤ 作成시에는 農業改良普及所等の 指導를 받고, 또 部落카드를 참고로하여 기입한다.
- ⑥ 「營農類型」欄은 「野菜 + 果樹」, 「養蠶 + 養豚」과 같이 主要作物을 記入한다.
- ⑦ 「關係部落番號」欄은 主要關係部落(目標戶數의 약 8 割을 차지하는 部落, 1 部落에서 8 割미만인 경우는 目標營農類型의 戶數의 合計가 약 8 割을 차지하는 上位複數의 部落)의 部落番號(基礎資料의 市町村整備計劃 策定經緯의 2에서 정하는 番號, 이하 같다)을 기입한다. 또 關係部落이 多數인 場合は 「1 ~ 10, 13 ~ 18」과 같이, 또 關係部落이 全部落에 미치는 경우는 「全部落」이라고 記載해도 상관없다.
- ⑧ 中核的農家の 目標規模, 戶數等を 達成하기 위한 流動化目標面積은 「目標規模」와 「戶數」를 곱한 것에서 基礎資料 6 의나의 「平均經營規模」와 「戶數」를 곱한 것을

(2) 農用地等の 農業上の 效率的・綜合的인 利用에 관한 誘導方向

(가) ○○地區

(나) ○○地區

나. 農業經營의 規模拡大 및 農用地等の 效率的・綜合的인 利用의 促進을 위한 方策

다. 森林整備 其他林業振興과의 關聯

라. 土地・水의 無秩序한 利用防止 關聯事項

5. 農業近代化施設의 整備計劃

가. 農業近代化施設의 整備方向

(1) ○○地區

(2) ○○地區

記 載 要 領

감한것이므로 農用地開發, 作業受委託, 遊休地의 利用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기술한다.

- ⑨ 中核의 農家가 참여하고 있는 協業經營에 대해서는 協業經營의 營農類型, 規模等에 대해 기재하여야 하고, 「戶數」欄에는 協業經營數를 기재한다.

農用地等の 農業上の 效率的・綜合的인 利用을 위한 農用地等の 流動化, 農作業의 受委託, 農作業의 共同化, 地域農業集團, 農業生産組織, 地力의 維持増進等の 誘導方向을 概括하고, 必要에 따라 地區별로 記述한다.

또 數値로서 밝히는 경우는 아래표를 참고할 것.

	農用地等 의 流動化	農作業의 受委託	農作業의 共同化	耕 地 利 用 率	裏作導入	
현 재(년)	ha	戶 ha	組織, 戶	%	ha	
1990 년						
1995 년						

- ① 가의 誘導方向을 實施하기 위하여 當該地域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方策을 기술한다.
- ② 方策별로 必要한 調査 및 弘報活動, 對象者, 地域의 範圍(部落名, 地區名等) 推進體制(方策推進에 있어서 指導的役割을 수행하는 者等)를 포함하여 추진시의 원칙을 기술한다.
- ③ 方策의 種類에 대해서는 1984 년施行通達의記의第2의3의(1)을 參照

轉作에 의한 地域農業生産의 再編成方向을 근거로 地域의 主要作目별로 目標로하는 農業生産技術體系 및 農業生産組織의 원칙 및 生産에서 流通, 加工에 이르는 一體的인 施設整備의 構想을 포함하여 地域全體에 대하여 農業近代化施設의 整備의 基本的方向을 간결하게 기술하고, 또 地區별로 구체적인 구상으로서 분명히 기술한다.

구체적인 구상으로서 기술할때에는 필요하면 地區內를 수개로 區分하여 明確化를 期하도록 하여야 한다.

樣

式

나. 農業近代化施設整備計劃

施設の 種類	位置 및 規模	受 益 の 範 圍			利用組織	對圖番號	備 考
		受益地區	受益面積	受益戶數			
			ha	戶			

다. 森林整備 其他林業振興과의 關聯

라. 土地・水の 無秩序한 利用防止 關聯事業

마. 他事業과의 關聯

6. 農業從事者の 安定的인 就業의 促進計劃

가. 農業從事者の 安定的인 就業의 促進目標

單位：人

區 分		從 業 地								
I	II	市 町 村 內			市 町 村 外			合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恒 常 的 勤 務	○ ○ 業									
	△ △ 業									
計										
自 營 兼 業										
計										
出 家										
計										
日 雇 ・ 臨 時 雇										
計										
總 計										

記 載 要 領

- ① 「施設の種類」欄은 1969년 運用通達의 記의 第3의 1의 (6)에 따라 기재한다.
- ② 施設の 種類名에는 具體的인 利用目的이 분명하도록 「稻作」, 「田作」, 「채소」, 「화훼」, 「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位置」欄을 字名을 기입한다.
- ④ 「受益地區」欄은 受益農用地區域의 地區・區域番號를 기입한다. 또 受益이 2以上の 地區에 걸치는 경우는 地區・區域番號를 列記한다.
- ⑤ 「利用組織」欄은 當割施設을 管理利用할 것이 지정되는 組織을 기입한다. 새로 組織을 만들필요가 있는 경우는 「(新規)」라고 기입하고, 組織의 種類를 기입한다.
- ⑥ 「對圖番號」欄을 一連番號(①, ②, ③, ……)를 기입한다.
- ⑦ 備考欄은 3의 나의 記載要領⑤에 準하여 기입한다.

農業振興地域整備基本方針에서 정하고 있는 擴域的인 건지에서행하는 것이 適當한 농업근대화시설의 정비에 관한 구상 및 현재 실시중 또는 실시계획인 광역적인 농업근대화시설의 整備事業과의 關聯에 대하여 記述한다.

- ① 動態調査等에 의한 농업종사자의 출가, 日雇 등의 불안정점업의 취업실태를 근거로 하여 농업종사자의 취업개선의 目標을 기술한다.

또, 필요하면 취업촉진목표와 농업구조개선과의 關係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 ② 基本資料 7의 가의 記載要領에 準하여 기입한다.

樣

式

나. 農業從事者의 安定的인 就業促進을 위한 方策

다. 森林整備其他 林業振興과의 關聯

라. 土地・水의 無秩序利用防止 關聯事項

7. 生活環境施設의 整備計劃

가. 生活環境施設의 整備目標

나. 生活環境施設의 整備計劃

施設의 種類	位置및 規模	對圖番號	備 考

다. 森林整備其他 林業振興과의 關聯

라. 土地・水의 無秩序한 利用防止 關聯事項

마. 他事業과의 關聯

8. 附 圖

- ① 當割地域에서 중점적으로 강구해야 할 方策의 概要(실시기간, 方策추진시에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者를 포함한다)를 기술한다.
- ② 方策의 種類에 대해서는 1984 年 施行通達의 記의 第 2 의 3 의 (2)를 참조

地域內에서 生活環境의 改善을 위해 生活環境施設의 整備目標을 기술한다.

- ① 當割地域에서 生活環境의 觀點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기입한다.
- ② 「施設의 種類」欄은 1984 年 運用通達의 記의 第 2 의 3 의 (2)에따라 기입한다.
- ③ 「對圖番號」欄은 일련번호(①, ②, ③……)를 기입한다.
- ④ 備考欄은 3 의 나의 記載要領⑤에 준한다.

현재 實施中이거나 실시계획인 農道整備事業, 農業部落排水事業等の 土地基盤整備事業, 一般道路整備事業等, 다른 事業과의 關聯에 대하여 記述한다.

整備計劃의 附圖로서 10,000 分の 1 의 市町村地形圖를 사용하여 각각 다음의 내용을 분명히한 圖面을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또, 圖面은 必要에 따라 附圖○의 1, 2 等과 같이 분할해도 상관없다.

또, 附圖 2 號, 3 號, 4 號는 경우에 따라서는 1 매의 부도에 표시해도 상관없다.

樣

式

別 添

1. 土地利用計劃圖(附圖 1 號)
2. 土地基盤整備開發計劃圖(附圖 2 號)
3. 農業近代化施設整備計劃圖(附圖 3 號)
4. 農村生活環境計劃圖(附圖 4 號)

施設の 種類名(計劃의 對圖番號) 및 施設の 大략적인 設置場所와 受益範圍를 밝힌 圖面.

事業種類名(計劃의 對圖番號) 및 事業의 種類별로 大략적인 受益範圍를 밝힌 圖面.

農業振興地域界, 地區界, 區域界 및 地區・區域番號, 그리고 用途區分界 및 用途를 밝힌 圖面.

施設の 種類名(計劃의 對圖番號) 및 施設の 大략적인 設置場所를 밝힌 圖面.

様

式

別 記 農用地利用計劃

(1) 農用地區域

(가) 現況農用地等에 대한 農用地區域

今後農用地等으로 이용해야 할 현황농용지등 및 이러한 토지에 포함 또는 인접해 있는 現況森林, 原野等이면서 將來農用地等으로 利用해야 할 土地를 일정구역별로 표시한다.

또, 農用地區域의 表示는 1969년 運用通達의 記의 第3의 1의 (3)에 근거, 실시하는 것이지만 計劃의 明確化, 簡略化를 위해서 地域內의 地區별로 A, B, C와 같이 일련기호를 붙이고 하나의 地區에 포함되는 개개의 農用地區域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표시하여야 한다.

(記載例)

(가) 現況農用地等에 관계되는 農用地區域

아래표의 「區域의 範圍」欄에서 정하는 區域內에 포함되는 土地중 「除外土地」欄에서 정하는 土地以外의 土地를 農用地區域으로 한다.

地區・區域 番 號	區 域 的 範 圍	除 外 土 地	備 考
A - 1	〇〇用左岸線, 〇〇市와 〇〇 町의 境界線, 縣道〇〇線으로 둘러싸인 區域	大字〇〇의 〇〇番地, 〇〇 番地에서 〇〇番地の 土地	
A - 2	大字〇〇	國道〇〇號線의 〇〇地點에 서 〇〇地點간의 道路敷地에 서 兩側〇〇m의 區域內의 土地	
A - 3	大字〇〇	町道〇〇線, 〇〇線, 〇〇線 과 〇〇川左岸線으로 둘러 싸인 區域內의 土地	

(記載上的 注意)

- 「위표에서 사용되고 있는 一定地物, 施設, 工作物은 年 月 日현재의 것을 말한다」라는 요지를 반드시 부기할것.
- 「區域의 範圍」의 크기는 표시방법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農用地等이 인접하여 존재하는 것은 分斷시키지 않고 가능한한 크게 구분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대략적인 목표로서는 「大字」정도로 한다.
- 農用地區域에 國有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備考欄에 그 위치 및 규모를 밝히고 法第11條第10項의 承認年月日이라는 番號를 기입한다. 단 法第11條第1項의 公告 시에는 기입할 필요는 없다.

様

式

(나) 現況森林, 原野等에 대한 農用地區域

(2) 用途區分

記 載 要 領

4. 표시를 할때에 「區域의 範圍」 「除外 土地」 등 文章表示에서는 명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부분에 대하여 대략 500 분의 1 ~ 2,500 분의 1 정도의 平面圖를 병용하여 표시의 명확화를 기할것.

現況農用地等에서 분리하여 존재하는 現況森林, 原野等중 장래농용지 동으로 용해야 할 토지를 표시한다.

(記載例)

(나) 現況森林, 原野等에 대한 農用地區域

아래표에 표시하는 區域의 土地는 農用地區域으로 한다.

地區・區域番號	區 域	備 考
A - 21	大字○○의 ○○番地, ○○番地, ○○番地の 土地	
A - 22	大字○○의 ○○番地, ○○番地, ○○番地와 町道○○線으로 둘러싸인 區域內的 土地	
B - 20	林班番號○○에서 ○○까지와 ○○番地の 土地	

(記載上の 注意)

1. 위표중의 「地區・區域番號」欄의 區域番號는 (가)의 표중에서 사용한 地區별의 區域番號의 末尾에 계속되는 일련번호를 붙일것.
2. 備考欄은 (가)의 記載上の 注意3에 준하여 기입한다.

用途區分의 表示는 農用地區域의 表示에서 사용한 「地區・區域番號」를 사용해서 개개의 農用地區域별로 그 區域에 포함되는 土地의 今後에 있어서 農業上の 用途(農地, 採草放牧地, 混牧林地, 農業用施設用地)가 분명하도록 1969년 運用通達의 記의 第3의 1의 (3)에 근거, 표시한다.

様

式

記 載 要 領

(記載例)

아래 표의 「地區・區域番號」에 관계되는 農用地區域內的 農業上的 用途는 「用途區分」欄에서 표시하는 대로 한다.

地 區 ・ 區 域 番 號	用 途 區 分
A - 1	農 地 : 大字○○의 ○○番地, ○○番地, ○○番地에서 ○○番地, ○○番地 및 ○○用左岸線과 農用地區域界線으로 둘러싸인 區域 農業用施設用地 : 大字○○의 ○○番地, ○○番地, ○○番地 및 ○○番地 採草放牧地 : 上記農地 또는 農業用施設用地로서 區分한 區分以外的 區域
A - 2	農 地 : 下記農業用施設用地로서 區分한 區域以外的 區域 農業用施設用地 : 大字○○의 ○○番地, ○○番地 및 ○○番地 및 大字○○의 ○○番地, ○○番地, ○○番地 및 ○○番地
B - 1	農 地 : 全區域
B - 2	農業用施設用地 : 大字○○의 ○○番地에서 ○○番地까지 및 ○○番地

빈 면

〈附〉「土地利用再編型」計劃書基礎資料의 記載要領

빈 면

様

式

〇〇農業振興地域整備計画書基礎資料
(土地利用再編型計画書基礎資料)

年 月

〇〇県〇〇郡(市) 〇〇町(村)

目 次

1. 地域의 概況	
가. 立地條件	
나. 人口 및 產業經濟의 動向 및 展望	
(1) 總人口, 世帶數 및 產業別就業人口의 動向 및 展望	
(2) 產業別生産額의 動向 및 展望	
다. 地域의 開發構想	
라. 農業關係法令에 근거한 各種 農業振興計劃의 概要	
마. 農業關係以外的 法令에 근거한 地域等의 指定狀況	
2. 土地利用의 動向等	
가. 農業振興地域의 土地利用 動向	
나. 農地의 開發可能面積	
다. 森林의 混牧林地로서의 利用可能性	
라. 農用地有效利用構想	
마. 白地農用地整備構想	
農用地評定圖	
農用地利用意向圖	
白地農用地地圖	
3. 農業生産의 現狀과 今後 方向	
가. 重点作物의 概要	
나. 農業生産의 現狀과 目標	
다. 集出荷販賣計劃	
(1) 農産物의 出荷量 및 出荷率의 動向	
(2) 集出荷販賣의 現狀 및 改善目標	
라. 農業生産技術의 改善目標	
4. 農業生産基盤의 現狀	
가. 農地의 整備率	
나. 畓에서의 排水 現狀	
다. 農業生産基盤 整備開發關係 各種 事業의 實施現況	
農業生産 基盤整備 狀況圖	
5. 農業經營의 規模 擴大 및 農用地等의 農業上の 效果的·綜合的인 利用 現狀	
가. 農家戶數의 動向 및 展望	
나. 中核的 農家의 營農類型의 現況	

- 다. 農用地 등의 流動化 現狀.....
- (1) 權利移動의 動向.....
- (2) 權利移動의 動向 - 農用地 등의 流動化 諸方策別.....
- 라. 農作業의 受委託 및 共同化, 地力の 維持增進, 耕地利用率, 裏作導入 등의 現狀.....
- 마. 地域農業集團 및 農業生産組織 등의 組織化의 現狀.....
- 바. 農用地에 관한 規模擴大等 希望戶數 및 面積
- 사. 農用地利用增進事業의 實施狀況
6. 農業近代化設施의 整備 現況
- 農業近代化 施設整備 狀況圖
7. 就業機會의 現狀.....
- 가. 農業從事者의 他產業就業 現狀.....
- 나. 農工法에 근거한 農村地域 工業導入 實施計劃 및 테크노폴리스法에 근거한 開發計劃의 概要
- 다. 農業從事者等에 대한 就業相談活動의 現狀
- 라. 企業誘致 및 企業誘致活動의 現狀
8. 農村生活環境의 現狀.....
- 가. 農村生活 環境整備事業의 實施狀況.....
- 農村生活 環境整備 狀況圖.....
- 나. 農村生活 環境整備의 問題點.....
9. 森林整備 其他林業 振興과의 關聯과 問題點
- 가. 林業의 概況
- 나. 農業振興과 林業振興과의 關聯에 관한 現狀과 問題點
- 다. 林業의 振興에 관한 諸計劃의 概要
10. 土地·水의 無秩序한 利用의 現狀.....
- 가. 農地 등의 都市的 轉換 現狀과 問題點
- 나. 農業用排水의 水質汚濁 現狀과 問題點
- 다. 湛水·溢水의 發生狀況과 問題點
11. 地域의 諸問題 解決을 위한 各種 協定, 合意 등의 實施狀況
- 가. 協定制度의 實施狀況
- 나. 交換分合.....
- (1) 實施狀況
- (2) 今後의 展望
12. 農業 및 農村의 振興 및 整備을 위한 推進體制等.....
- 가. 推進體制圖.....
- 나. 市町村의 財政狀況
- 다. 其他 參考事項

樣

式

1. 地域의 概況

가. 立地條件

나. 人口 및 産業經濟의 動向 및 展望

(1) 總人口, 世帶數 및 産業別就業人口의 動向 및 展望

單位: 人, 世帶, %

	總人口		總世帶數		産業別就業人口				
					總就業人口	第1次	中農業	第2次	第3次
1980 年	(100)	()	(100)	()	(100)	()	()	()	()
1985 年	(100)	()	(100)	()	(100)	()	()	()	()
현재 (年)	(100)	()	(100)	()	(100)	()	()	()	()
1990 年 전망	(100)	()	(100)	()	(100)	()	()	()	()
1995 年 전망	(100)	()	(100)	()	(100)	()	()	()	()

註: 1. 市町村行政區域에 관한 數字이다.

2. 資 料 :

3. () 내는 구성비 이다.

地域의 位置, 範圍, 自然條件(기상, 지형, 토양, 수리등), 교통·운송조건, 시장조건에 대하여 간결하게 기술한다.

- ① 地域의 人口, 世帶數, 産業別의 就業人口, 生産額等의 추이를 기술하고, 地域經濟의 特色 및 農業이 차지하는 위치를 기술한다.
- ② 1980 년 및 1985 년의 「中農家人口」欄 및 「中農家」欄에 대해서는 農業센서스(農家人口는 農家世帶員數로 한다.) 그 이외의 란에 대해서는 國勢調査에 의해 기술한다. 現在欄은 市町村統計에 의해 기입한다.
- ③ 1990 년 및 1995 년의 전망란은 地方自治法 제 2 조제 5 항의 當該市町村의 建設에 관한 基本構想(同基本計劃 및 實施計劃), 都道府県將來推計人口等 및 市町村이 독자로 작성한 계획등에 의해 기입한다.
- ④ 註의 「資料」에 의해 數字의 出典, 계획방법등을 밝힌다 (이하 註의 「資料」에 대해서 같다.)

樣

式

(2) 産業別生産額의 動向 및 展望

單位：百萬円, %

	産 業 別 生 産 額				
	總 生 産 額	第 1 次	中 農 家	第 2 次	第 3 次
1980 年	(100)	()	()	()	()
1985 年	(100)	()	()	()	()
現 在 (年)	(100)	()	()	()	()
1990 年 前 望	(100)	()	()	()	()
1995 年 前 望	(100)	()	()	()	()

註： 1. 資 料：

2. 産業別 生産額의 () 內는 구성비 이다.

다. 地域의 開發構想

(1) 地域의 開發計劃

(2) 地域開發의 影響

(3) 其他 地域開發의 構想

라. 農業關係法令에 근거한 各種 農業振興計劃의 概要

計劃等名	地域指定, 計劃策定等年度	指定地域等の 範圍	內 容

마. 農業關係以外的 法令에 근거한 地域等の 指定狀況

地 域 等 의 名 稱	指 定 等 年 月 日	根 據 法 令

- ① 1980 년, 1985 년 및 現在欄을 市町村統計等に 의해 기입한다.
- ② 1990 년 및 1995 년의 전망란은 (1)의 기재요령의 ③에 의해 기입한다.

地域開發의 地區名, 事業(豫定)年度, 開發(豫定)者, 事業의 概要(面積, 施設等)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또 關聯 開發計劃의 있으며 당해개발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함께 기술한다.

地域開發이 지역의 토지이용, 농업생산, 농업생산기반, 농업근대화시설, 취업기회 등 각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① 지역에 관계하는 酪農·肉用牛生産近代化計劃, 과수농업진흥계획 其他法令에 근거한 각종농업진흥계획 및 지역지정에 대하여 기입한다.
- ② 「內容」欄에는 계획별로 그 개요를 간결하게 한다.

當該市町村의 토지이용 또는 지역의 농업이외의 산업진흥에 관한 지역등의 지정중 법에 근거한 것에 대하여 기입한다.

樣

式

2. 土地利用의 動向等

가. 農業振興地域의 土地利用 動向

單位 : ha, %

	總面積	農 用 地			農業用 施設 用 地	森 林 原 野	混 林 牧 地	住宅地	工場 用 地	其 他
		農 地	採草放 牧 地	計						
1980 年	(100)	()	()	()	()	()	()	()	()	()
1985 年	(100)	()	()	()	()	()	()	()	()	()
현재(年)	(100)	()	()	()	()	()	()	()	()	()

註 : 1. () 내는 구성비이다.

2. 資料 :

나. 農地의 開發可能地 面積

單位 : ha

區 分 \ 傾 斜	8° 未 滿	8° ~ 15°	15° ~ 30°
市 町 村 行 政 區 域			
農 業 振 興 地 域			
農 用 地 區 域			
其 他			

註 : 1. 市町村行政區域 및 其他에는 市街化區域 및 用途地域(都市計劃法の 市街化區域 및 未線引都市計劃區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되는 農地에 대한 開發可能地는 포함하지 않는다.

2. 農地開發可地分級調查結果에 時點의 修正을 가한 것이다.

3. 農用地區域(案)은 認可를 받고자 하는 整備計劃에 의한 農用地區域이다 (이하 같다.)

① 國土利用計劃(市町村計劃)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의한 市町村行政區域의 토지 이용동향을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에 준해서 作成한 市町村行政區域의 토지 이용동향을 기초로 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이용동향을 작성, 기입한다.

② 混牧林地 및 農業用施設用地以外の 利用區分の 定義는 國土利用計劃(市町村計劃)에 의하지만 混牧林地 및 農業用施設用地에 대해서는 1969년 運用通達의 記의 第3의 1의(3) 및 1975년 施行通達의 記의 第1의 2에 의한다.

① 「分級調査에 의해 記入하여야 하지만 分級調査는 1975년 3월 31일 시점이기 때문에 그후의 農地振興地域의 區域 및 農用地區域의 變更, 農用地開發의 實績을 考慮하여 所要의 修正을 가한 후 기입한다.

② 修正시에는 分級調査가 1975년 基本調査를 基礎하고 있기 때문에 基本調査의 結果도 參考로 한다.

樣

式

다. 森林의 混牧林地로서의 利用可能性

單位: ha

	現況混牧林地面積 (年)	左以外の 森林의 混牧林地로서의 利 用 可 能 性
市町村行政區域		
農業振興地域 (農用地區域(案))		
其 他		

註: 市町村行政區域 및 其他에는 市街化區域 및 用途地域에 포함되는 混牧林地 및 混牧林地로서의 利用可能地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 農用地有效利用構想

마. 白地農用地整備構想

(1) 對象地區

(2) 白地農用地整備構想

農用地評定圖 別添

農用地利用意向圖 別添

白地農用地地圖 別添

3. 農業生産의 現狀과 今後의 方向

가. 重點作目の 概要

- ① 「左以外の 森林의 混牧林地로서의 利用可能性」欄은 現在混牧林地로서 이용되지 않은 森林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 토지이용상의 제약등을 고려하고, 混牧林地로서 이용가능한 森林의 위치, 면적, 이용방법등을 크게 기술한다.
- ② 「市町村行政區域」및 「其他」에는 市街化地域, 用途地域에 포함되는 混牧林地 및 混牧林地로서의 利用可能地는 포함되지 않는다.

構想의 對象地區名, 遊休 또는 荒作등 低利用農用地의 면적등 현재의 利用狀況 및 農用地有效利用構想에 대하여 기술한다.

構想을 수립하는 地區의 선정방침 및 구상을 수립하는 地區의 대략적인 範圍(大字, 字)에 대하여 記述한다.

- ① 畜利用의 高制度와 畜農業의 생산성향상에 유의하면서 當該地域의 농업생산의 再編成을 도모하는데 重點作目を 밝히고 그 생산의 동향과 목표에 대해서 기술한다.
- ② 食品産業과 關聯한 加工原材料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別途의 當該作目に 관계되는 농업생산의 동향과 목표에 대하여 기술한다.

樣

式

나. 農業生産의 現狀과 目標

作目	1980 年			1985 年			현재(年)			1989 年			1992 年			1995 年			
	作付面積飼養頭數	生産量	粗生産額	作付面積飼養頭數	生産量	粗生産額	作付面積飼養頭數	生産量	粗生産額	生産量伸張率	作付面積飼養頭數	生産量	生産量伸張率	作付面積飼養頭數	生産量	生産量伸張率	作付面積飼養頭數	生産量	生産量伸張率
米	ha									100									
麥類	"									100									
()	"									100									
雜穀豆類	"									100									
()	"									100									
()	"									100									
薯類	"									100									
()	"									100									
施設野菜	a									100									
()	"									100									
()	"									100									
露地野菜	ha									100									
()	"									100									
果樹	"									100									
()	"									100									
施設花卉	a 本									100									
()	" "									100									
露地花卉	ha									100									
()	" "									100									
工藝作物	"									100									
()	"									100									
飼料作物	"									100									
()	"									100									
其他耕種作物	"									100									
()	"									100									
養蠶(桑)	"									100									
	< >			< >			< >			< >			< >			< >			
肉牛頭										100									
乳牛	"									100									
豚	"									100									
計採卵用首										100									
計肉用	"																		
其他畜產物										100									
()										100									
其他										100									
總計	-	-	-	-	-	-	-	-	-	-	-	-	-	-	-	-	-	-	-

- 註 : 1. 作目欄의 () 內는 重點作目이다.
 2. 養蠶(桑) 欄의 < > 內는 掃立卵量이다.
 3. 資料 :

- ① 가에 표시한 重點作目を 포함하여 主要作目に 대하여 記入한다.
- ② 가에서 표시한 重點作目に 대해서는 作目名에 ()를 붙인다. 또 重點作目이 大豆, 사탕무우등 구체적인 種類로 표시되는 경우는 각각 雜穀豆類, 기타 耕種作物등의 「作目」欄에 (大豆), (사탕무우) 등으로 기입하여 生産목표를 세운다.
- ③ 화훼에는 園藝樹木을 포함한다.
- ④ 飼料作物에 대해서는 판매하는 경우에만 그 粗生産額을 기입한다.
- ⑤ 養蠶(桑)의 「作付面積」欄에는 桑園面積 및 掃立卵量, 「生産量」欄에는 收納量을 기입한다.
- ⑥ 肉牛의 粗生産額에는 仔牛, 育成牛, 肉牛, 廢牛의 販賣額을 포함한다.
- ⑦ 乳牛의 生産量은 生乳의 生産量으로, 粗生産額에는 生乳, 仔牛, 育成牛, 廢牛의 販賣額을 포함한다.
- ⑧ 豚의 粗生産額에는 仔豚, 肉豚의 販賣額을 포함한다.
- ⑨ 「其他」欄에는 耕種, 畜産以外の 것에 대하여 記入한다.
- ⑩ 生産農業所得統計, 作物統計等에 의해 기입한다.
- ⑪ 施設野菜, 施設花卉의 作付面積은 α 로 표시한다.
- ⑫ 市町村 畜農業確立計劃과의 調整을 도모하여야 한다.

樣

式

다. 集出荷販賣計劃

(1) 農産物의 出荷量 및 出荷率의 動向

單位 : 톤, %

作 目	1980 年			1985 年			現 在 (年)		
	生産量 (A)	出荷量 (B)	出荷率 (B / A)	生産量	出荷量	出荷率	生産量	出荷量	出荷率

註 : 資料 :

(2) 集出荷販賣의 現狀 및 改善目標

라. 農業生産技術의 改善目標

- ① 「作目」欄은 나와 일치시킨다.
- ② 出荷量은 市町村統計等に 의해 기입한다.
- ③ 出荷率 = (出荷量/生産量)×100 으로 한다.

가의 重點作目を 포함하여 地域의 主要한 作目に 대해서 集出荷販賣의 現狀, 問題點 및 改善點을 全般的으로 記述하고, 그 중 集出荷販賣의 改善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轉作의 定着化를 위한 改善點을 포함한 改善目標을 作目別로 集出荷, 貯藏, 出荷時期, 共販率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또 當該地域의 全部 또는 一部를 그 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農業協同組合이 經營指導等 事業通達의 第3의 4에 근거 地域農業再編 共同活動推進事業을 실시하는 農業協同組合일 경우에는 당해사업으로 査定되는 生産·販賣計劃을 참고로 하여야 한다.

가의 重點作目に 대하여 當該地域의 土地條件(整備後의 條件)에 따라 適用할 수 있는 範圍에서의 機械化를 기준으로 하여 作付體系, 栽培(食糧) 技術, 作業體系等の 問題點을 밝히고, 그 改善에 대한 원칙 및 目標을 기술한다.

4. 農業生産基盤의 現狀

가. 農地의 整備率

單位 : %

	現 在 (年)	目 標
畚		
田		
樹 園 地		

註 : 1. 市町村行政區域內의 數字이다.

2. 畚의 整備率은 30a 정도로 정비된 畚의 비율이다.

3. 田, 樹園地의 整備率은 農道가 幹線, 支線 모두 完備된 것의 비율이다.

나. 畚에서의 排水의 現狀

單位 : ha

地 區	畚 의 排 水 現 狀			市 町 村 畚 面 積	農 業 振 興 地 域 內 畚 面 積	農 用 地 內 畚 面 積
	4 時 間 排 除	日 排 除	排 水 不 良			
計						

註 : 4 時 間 排 除 ……… 出水時에 湛水가 4 시간이상 계속되는 面積이 10 %미만인 것.
(湛水가 畝高程度이고, 田作物이 冠水하지 않는 면적이 90 % 이상인 것).

日 排 除 ……… 出水時에 湛水가 1 일이상 계속되는 면적이 10 %未滿인 것.

不 良 ……… 出水時에 湛水가 1 일이상 계속되는 면적이 10 %이상인 것.

다. 農業生産基盤의 整備開發關係 各種 事業의 實施狀況

事業種目	受益面積	事業費	主要工事의 名稱 및 事業量	事業主體	事業의 着工完了 (豫定) 年度	對圖番號
	ha	千圓				

- ① 「現在」欄은 1983 년 基本調査의 結果를 參考하고, 그후의 整備狀況에 조성 및 개폐의 상황을 근거로 기입한다.
- ② 「目標」欄은 整備計劃에서 계획된 사업을 달성한 경우의 整備水準을 기입한다.

- ① 「地區」欄은 農用地區域의 地區番號를記入한다.
- ② 「水田의 排水現狀」欄은 農用地區域內의 水田중 排水不良畓의 面積을 다음과 같이記入한다.
 - ㄱ. 「4 時間排除」欄은 出水時에 湛水가 4 시간이상 계속되는 면적이 10 %미만인 것(湛水가 畝高程度이고, 田作物이 冠水하지 않는 面積이 90 %이상인 것)의 面積을記入한다.
 - ㄴ. 「日排除」欄은 出水時에 湛水가 1 일이상 계속되는 면적이 10 %미만인 것의 面積을 기입한다.
 - ㄷ. 「不良」欄은 出水時에 湛水가 1 일이상 계속되는 면적이 10 %이상인 것의 面積을 기입한다.
- ③ 1983 년 基本調査結果를 參考로 한다.

- ① 事業이 完了된 것 또는 現在 事業實施中이거나 調査計劃中인 것을 기입하지만 (ㄱ)國, 縣營事業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ㄴ)國, 縣營事業以外의 事業에 대해서는 圃場整備事業 혹은 農用地造成事業等の 面的인 사업중에서 主要한 것을 대상으로 할 것.
- ② 「對圖番號」欄은 사업에 관련번호(1. 2. 3.)를 기입한다.
- ③ 事業名, 受益範圍等を 표시한 農業生産基盤整備狀況圖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農業生產基盤整備狀況圖 別 添

5. 農用經營의 規模擴大 및 農用地等の 農業上的 效率的 · 綜合的인 利用의 現況

가. 農家戶數의 動向 및 展望

單位：戶

	總戶數	專兼別內譯			經營耕地規模別內譯					
		專業	第1種兼業	第2種兼業	0.5 ha 미만	0.5 ~ 1.0 ha	1.0 ~ 1.5 ha	1.5 ~ 2.0 ha	2.0 ~ 3.0 ha	3.0 ha 이상
1980 년	()									
1985 년	()									
현재(년)	()									
1990 년전망	()									
1995 년전망	()									

註：1. () 내는 中核的農家數이다.

2. 資料：

나. 中核的農家의 營農類型 現況

營農類型		現況	
		平均經營規模	戶數 (經營體數)
個人經營		ha	
	計		
協業經營			
	計		

- ① ()내에 中核的農家の 數를 記入한다.
- ② 北海道에서는 經營耕地規模의 區分은 3 ha미만, 3 ~ 5 ha, 5 ~ 7.5 ha, 7.5 ~ 10 ha, 10 ~ 20 ha, 20 ha이상으로 한다.
- ③ 1980 년 및 1985 년란은 農業센서스, 現在欄은 市町村統計等에 의해 기입한다.
- ④ 1995 년 및 1995 년 전망란은 註의 「資料」 또는 推計方法等を 분명히 기입한다.

- ① 中核的農家 또는 中核的農家が 參加하고 있는 協業經營의 現況에 대하여 記述한다.
- ② 「營農類型」欄은 「野菜+果樹」, 「養蠶+養豚」과 같이 主要作目名을 기입한다.
- ③ 中核的農家が 參加하고 있는 協業經營에 대해서는 協業經營의 經營類型, 규모等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戶數」欄에는 協業經營體數를 기재한다.

樣

式

다. 農用地의 流動化 現況

(1) 權利移動의 動向

單位：ha, 円

	賣 買 增 與				賃 借 權 設 定		使用賃借權 設 定		其 他 合 計				農地價格 (自作地耕作目的) 千円/10a	標準 小作料 円
	件數	面積 ha	件數	面積 ha	件數	面積 ha	件數	面積 ha	件數	面積 ha	件數	面積 ha		
年													中畚 中田	
年													中畚 中田	
年													中畚 中田	
計														

註：資料

(2) 權利移動의 動向 - 農用地等의 流動化諸方策別

單位：ha

	農地移動適正化斡旋事業				農用地利用增進事業				
	賣 買		貸 借		所有權移轉		利用權設定		
	件 數	面 積	件 數	面 積	件 數	面 積	件 數	面 積	
年									
年									
年									
計									

① 最近 3 년간에 대하여 「農地移動實態調査」結果, 「利用權設定等實態把握調査」結果, 「畚・田賣買價格等에 관한調査」結果등에 의해 기입한다.

② 각각의 權利移動에 대해서는 農地法 및 農用地利用増進法에 의한 것의 合計値를 기입한다.

① 最近 3 년간에 대하여 農業委員會 資料등에 의해 기입한다.

② 2 이상의 方策에 重複하는 것에 대해서는 該當하는 方策의 각각에 기입한다.

③ 「其他」欄에는 農業者年金基金에 의한 買入, 賣渡, 融資事業等에 의한 것을 기입하고 註에 그중 주요한 것을 기술한다.

樣

式

單位 : ha

農地保有合理化促進事業					其 他	
賣 買		貸 借				
	件 數	面 積	件 數	面 積	件 數	面 積

註 : 其他欄에서 주된 方策은 ○○○, ○○○이다.

라. 農作業의 受委託 및 共同化, 地力の 維持增進, 耕地利用率, 裏作導入等の 現況

	農作業의 受委託	農作業의 共同化	耕地利用率	裏作導入	
1980 년	戶 ha	組織 戶	%	ha	
1985 년					
현재(년)					

마. 地域農業集團 및 農業生産組織等の 組織化現況

組 織 名	設 立 年 度	組織構成員數	活 動 內 容	關係部落番號
		()		
		()		
		()		
		()		

註 : () 내는 中核的 農家數이다.

- ① 農作業의 受委託은 관계농가호수, 면적을 기입한다.
- ② 農作物의 共同化는 조직수, 참가농가호수를 기입한다.
- ③ 裏作導入은 作村面積, 주요작목을 기입한다.
- ④ 地力の 維持増進, 輪作, 遊休地・荒作의 解消等에 대하여는 文章으로 記述한다.

- ① 「組織構成員數」欄에는 ()내에 中核的 農家數를 기입한다.
- ② 「活動內容 및 效果」欄은 當該 農業生産組織의 活動이 個別 農業經營에 미친 效果도 포함하여 간결하게 기술한다.
- ③ 「關係部落番號」欄은 主要關係部落(組織構成員의 약 8割을 차지하는 部落, 1 部落에서 8割미만인 경우는 組織構成員의 合計가 약 8割을 차지하는 上位複數의 部落)의 部落番號를 記入한다. 또 關係部落이 多數인 경우는 「1~10, 13~18」과 같이, 또 關係部落이 全部落에 이르는 경우는 「全部落」이라고 기재해도 상관없다.

樣

式

바. 農用地에 관한 規模擴大等 希望戶數 및 面積

單位：戶, ha

豫想期間	部落番號	規模擴大希望		規模縮小希望	
		戶數	面積	戶數	面積
3년미만					
3년~5년					
5년이상					

註：1. 예상기간이란 部落카드 작성시의 예상기간이다.

2. 部落카드에 의한다.

사. 農用地利用增進事業의 實施에 관한 方針等의 作成狀況

ㄱ. 實施方針의 承認年月日

ㄴ. 農用地利用增進計劃의 公告年月日

6. 農業近代化施設의 整備現況

	事業種目	受益面積	受益戶數	事業費	施設의 概要		事業主體	事業의 着工完了(豫定)年	對圖番號
					名稱	數·規模			
生産關係施設		ha	戶	千円					
流通加工關係施設									

農業近代化施設整備狀況圖 別添

- ① 部落카드를 예상기간에 따라 정리하여 기입한다.
- ② 「部落番號」欄은 각각의 예상기간에 해당하는 部落의 部落番號를 기입한다.

- ① 共同利用施設로서 國家 또는 縣의 補助事業에 의해 整備된 것을 기입한다.
- ② 生産關係施設과 流通加工關係施設の 區分은 다음에 따른다.

生産關係施設 : 畜舍, 堆肥舍, 蠶室, 溫室, 農機具收納施設等 畜産物의 生産 으로 사용되는 시설

流通加工關係施設 : 農産物集出荷施設, 農産物調製施設, 農産物貯藏施設等 集荷, 調製, 貯藏 또는 出荷用으로 사용되는 施設

- ③ 「對圖番號」欄은 事業에 일련번호(①, ②, ③, ……)를 기입한다.
- ④ 施設名, 設置場所, 受益範圍等を 表示한 農業近代化施設整備狀況圖를 작성, 첨부한다.

樣

式

7. 就業機會의 現況

가. 農業從事者의 他産業就業現況

單位：人

區 分		從 業 地								
I	II	市 町 村 內			市 町 村 外			合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恒當的勤務	○ ○ 業 △ △ 業									
計										
自營兼業										
計										
日雇・臨時雇										
計										
總 計										

나. 農工法에 근거한 農村地域工業導入實施計劃 및 테크노폴리스法에 근거한 開發計劃의 概要

<○○計劃의 概要>

	地 區 名	企 業 體	工場用地 面 積 (㎡)	出荷額 (百萬円)	雇用從業 員 數 (A)	左 中 農 業 從 事 者 (B)	B / A (%)	主要業種
計劃(○○年)	○○地區							
	合 計							
實績(○○年)	○○地區							
	合 計							

註：實績은 操業中인 것이다.

- ① 앙케이트조사등에 의한 農業從事者の 農業以外 産業으로의 就業現況을 左表를 참고로 하여 분명히 한다.
- ② 區分欄의 I은 形態別, II는 産業別, 業種別이다.
- ③ 形態別이란 恒常的勤務, 出家, 日雇・臨時雇, 自營兼業等の 分類에 의한다. 또 恒常的勤務, 出家, 日雇・臨時雇, 自營兼業의 定義는 농업센서스에 의한다.
- ④ 産業別이란 日本標準産業分類의 大分類에 의한다.
- ⑤ 業種別이란 日本標準産業分類의 中分類 또는 小分類에 의한다.
- ⑥ 農業從事者란 농업센서스의 定義에 의한다.

實施計劃書 및 開發計劃書에 作成되어 있는 市町村에 대해서는 同計劃書의 計劃 및 操業中인 것의 實績을 기입한다.

樣

式

11. 地域諸問題의 解決을 위한 各種協定, 合意等의 實施狀況

가. 協定制度의 實施狀況

名 稱	地區名	締結時期	有效期間	參 如 者	內 容	備 考
		年月	年	人		

나. 交換分合

(1) 實施狀況

地 區 名	實施時期	事業主體	對象面積	參 如 者	備 考
	年 月		ha	人	

(2) 今後의 展望

12. 農業 및 農村의 振興 및 整備를 위한 推進體制等

가. 推進體制圖

- ① 當該地域에서 締結되어있는 協定, 合意동의 내용에 대하여 기입한다.
- ② 法에 근거한 協定에 대해서는 備考欄에 그 내용을 밝힌다.
- ③ 法에 근거한 協定은 모두 기입하고, 法以外の 것은 過去3 년간에 대하여 기입한다.

- ① 當該地域에서 실시된 交換分合의 개요에 대하여 기입한다.
- ② 法에 근거한 경우와 土地改良法에 근거할 경우를 備考欄에 그 내용을 밝힌다.

農業 및 農村의 振興 및 整備를 위한 市町村, 農業團體, 部落을 포함한 推進體制를 圖示한다. 또 市町村의 農業振興地域制度主務課를 ☐ 로서 표시한다.

8. 農村生活環境의 現狀

가. 農村生活環境整備事業等の 実施狀況

事業種目	受益地區	受益戶數 (人口)	事業費 千円	主要工事と 主要施設名	事業主	事業の完了 (豫定) 年度	對 審 圖 號

農村生活環境整備狀況圖 別添

나. 農村生活環境整備의 問題點

(1) 安全性

(2) 保健性

(3) 便利性

(4) 快適性

(5) 文化性

- ① 農業振興地域을 受益의 對象으로한 國가 또는 縣의 補助事業, 現在實施中 및 調査計劃中인 것도 포함하여 記入한다.
- ② 「受益地區」欄은 受益農用地區域의 地區・區域番號를 記入한다. 또 受益이 2 以上の 地區・區域에 이르는 경우는 地區・區域番號를 列記한다.
- ③ 「對圖番號」欄은 事業에 일련번호 (①, ②, ③, ……) 를 기입한다.
- ④ 施設名, 場所等を 表示한 農村生活環境整備狀況圖를 作成, 첨부한다.

農村生活環境의 現狀 및 農村生活環境整備事業等の 實施狀況等を 근거로 農村生活環境, 農村生活環境整備等に 대한 問題點을 下記의 ①~⑤로 나누어 다룬다.

① 安 全 性

防災, 防火, 交通安全, 방법등에 대하여 다룬다.

② 保 健 性

쓰레기처리, 배수처리, 분뇨처리, 害蟲驅除, 給水, 보건, 醫療等に 대하여 다룬다.

③ 便 利 性

교통통신등에 대하여 다룬다.

④ 快 適 性

농촌공원, 노인, 탁아등에 關連하는 公共施設의 이용등에 대하여 다룬다.

⑤ 文 化 性

스포츠활동, 교양오락, 향토행사, 藝能保存等に 대하여 다룬다.

樣

式

9. 森林의 整備 其他林業의 振興과의 關聯에 관한 現狀

가. 林業의 概況

나. 農業振興과 林業振興의 關聯에 관한 現狀과 問題點

다. 林業의 振興에 관한 諸計劃의 概要

10. 土地・水의 無秩序한 利用現狀

가. 農地等의 都市의 轉換의 現狀과 問題點

單位：ha

用 途	住宅用地		工 業 用 地		學校用地		公 園 ・ 運動用地		道・水路 銑道用地		植 林		其 他		計	
	件數	面積	件數	面積	件數	面積	件數	面積	件數	面積	件數	面積	件數	面積	件數	面積
年																
年																
年																

나. 農業用排水의 水質汚濁現況과 問題點

다. 湛水・溢水의 發生狀況과 問題點

單位：ha

	件 數	被 害 面 積
年		
年		
年		

當該地域에서 林業의 位置, 삼림면적, 수종, 林齡構成等の 현황, 森林施業의 동향, 林道의 정비상황, 임산물생산유유통가공시설의 정비상황, 임업생산의 동향, 林家의 상황, 삼림조합의 현황, 林業關聯産業의 동향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소득, 취업, 토지이용 및 임산물의 농업자료·시설로서의 利用等の 면에서 농업의 진흥과 임업의 진흥의 關聯에 대한 현상과 문제점을 기술한다.

林業振興地域整備計劃, 森林整備計劃等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개요를 기술한다.

① 農地等 (混牧林地를 포함한다.) 의 都市的轉換의 現狀과 問題點에 대하여 最近의 傾向을 記述한다.

② 過去3년간의 실적을 기입한다.

農業用排水의 水質汚濁현상과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湛水·溢水의 발생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최근의 경향을 기술한다.

② 過去3년간에 대하여 기입한다.

様

式

다. 農業従事者に 대한 就業相談活動의 現状

時 期	推 進 主 體	對象者및 參加人員	內 容

라. 企業誘致 및 企業誘致活動의 現状

時 期	推 進 者	對 象 企 業 名	內 容

① 過去 3 년간의 實積을 기입한다.

② 「對象者 및 參加人員」欄은 相談活動別로 對象者 및 參加人數를 기입한다.

① 過去 3 년간의 實積을 기입한다.

② 「內容」欄에는 企業에 대한 PR活動, 신문광고, 當町出身의 企業家에 대한 要請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樣

式

나. 市町村의 財政狀況

單位：千円

	○ ○ 年	○ ○ 年	○ ○ 年	○ ○ 年	○ ○ 年
歲 出 合 計 (A)					
農 業 開 發 費 (B)					
農 業 關 係 事 業 市 町 村 負 担 金					
B / A (%)					
財 政 力 指 數					
實 質 收 支 比 率 (%)					
公 債 費 比 率 (%)					
經 常 收 支 比 率 (%)					

다. 其他參考 事項

最近 5 年間に 대하여 기재한다.

빈 면

D-50-3 : 農地保全關係資料集 (第3輯)
日本の 農業振興地域制度 (Ⅱ)

1988. 10 월

發行人 金 榮 鎮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登錄 1979年 5月 25日 第5-10號

電話 962-7311

印 刷 東洋文化印刷株式會社

出處를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 및 複製는 禁함.